

##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9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9. 12 (수요일), 14:00 ~ 18: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노중국, 김권구,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이태진,  
최성락, 홍승재(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    |                                                               |  |
|----|---------------------------------------------------------------|--|
| 1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  |
| 2  |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 동장대 정비 및 화홍문 안전휀스 설치                           |  |
| 3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종로구)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
| 4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중구)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
| 5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  |
| 6  |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출입                                       |  |
| 7  |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주변 중학교 체육관 신축                                 |  |
| 8  | 사적 제23호 경주 경덕왕릉 내 배수로 정비                                      |  |
| 9  |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제조시설 건립                                        |  |
| 10 |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11 |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시정연수원 증축                                   |  |
| 12 |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1)                               |  |
| 13 |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2)                               |  |
| 14 |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15 | 사적 제82호 경주 천군동 사지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  |
| 16 |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
| 17 | 사적 제125호 종묘 내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자 통로 등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
| 18 | 사적 제130호 강화 삼량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 19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컨테이너 창고 설치                                   |  |
| 20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                                  |  |
| 21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강화군청사(별관) 건립                                 |  |
| 22 |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주변 수종갱신 및 화장실 신축                             |  |
| 23 |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등 건립                                 |  |
| 24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국녕사 내 종각 설치                                  |  |
| 25 |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등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                              |  |
| 26 |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동구릉역사공원 조성사업                               |  |

|    |                                                           |  |
|----|-----------------------------------------------------------|--|
| 27 |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주변 우량농지 개량사업                              |  |
| 28 |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인천검단지구 광역도로 개설                          |  |
| 29 |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내외 가로등 설치                                  |  |
| 30 |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주변 하부 지하도로 산성터널 굴착                          |  |
| 31 |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주변 산성마을 배수지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관로설치 등(허가사항 변경허가) |  |
| 32 | 사적 제224호 강화 홍릉 주변 청소년야영장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
| 33 |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내 남문 및 성벽 복원                             |  |
| 34 |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내 고사목 제거                                 |  |
| 35 |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공유수면매립(허가사항 변경허가)                   |  |
| 36 |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부잔교 설치                              |  |
| 37 |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식생복원사업                               |  |
| 38 |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  |
| 39 |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내 템플스테이 시설 신축                             |  |
| 40 |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외 도로터널 등 개설                            |  |
| 41 |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  |
| 42 |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                                |  |
| 43 | 사적 제347호 익산 입점리 고분군 주변 숲가꾸기 사업                            |  |
| 44 |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주변 트레이닝센터 본관동 증축                         |  |
| 45 |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문화재구역 내 담장 및 대문 설치                       |  |
| 46 |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내 개천절민족행사 개최                             |  |
| 47 |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주변 군 독신자숙소 신축                            |  |
| 48 | 사적 제364호 구리 명빈묘 주변 태극기 게양대 설치                             |  |
| 49 | 사적 제400호 충주 장미산성 내 시굴조사                                   |  |
| 50 | 사적 제404호 나주 북암리 고분군 주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부설                      |  |
| 51 |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주변 다세대 주택 신축                             |  |
| 52 |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주변 송전철탑 설치                                  |  |
| 53 |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주변 가로수 식재                                   |  |

|               |                                                                      |  |
|---------------|----------------------------------------------------------------------|--|
| 54            |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내외 도로구조 개선사업                                     |  |
| 55            |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내 테마공원 조성                                            |  |
| 56            |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  |
| 57            |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단독주택 신축                                             |  |
| 58            |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  |
| <b>【검토사항】</b> |                                                                      |  |
| 59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  |
| 60            |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사유지 점유 담장 관련 검토                                     |  |
| 61            | 사적 제436호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검토                                  |  |
| 62            | “충무공탄신일” 명칭 변경 검토                                                    |  |
| 63            |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검토                                       |  |
| <b>【보고사항】</b> |                                                                      |  |
| 64            |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탐방로 개선사업 계획 보고                                  |  |
| 65            |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무선랜 환경(WiFi) 구축 보고                                    |  |
| 66            |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1600년전 압록국으로의 여행” 계획 보고 |  |
| 67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9-001

###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5필지 672㎡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7차 회의(7.4)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2.7.17(문화재청 공고 제2012-193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650필지 287,013㎡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5필지 672㎡
  - 추가지정 후 면적 : 655필지 287,685㎡
- (4)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2.5.15)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

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번<br>면적(m <sup>2</sup> ) | 지정<br>면적(m <sup>2</sup> ) | 소유자 |    |
|------------|------------------|--------|----|---------------------------|---------------------------|-----|----|
|            |                  |        |    |                           |                           | 성명  | 주소 |
| 1          | 서울<br>송파구<br>풍납동 | 149-4  | 대  | 99                        | 99                        |     |    |
| 2          |                  | 137-6  | 대  | 165                       | 165                       |     |    |
| 3          |                  | 88-42  | 대  | 99                        | 99                        |     |    |
| 4          |                  | 292-11 | 대  | 149                       | 149                       |     |    |
| 5          |                  | 140-33 | 대  | 160                       | 160                       |     |    |
| <b>5필지</b> |                  |        |    | <b>672</b>                | <b>672</b>                |     |    |

## 2. 수원 화성 내 동장대 정비 및 화홍문 안전휀스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 동장대 정비 및 화홍문 안전 휀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 내 동장대 시설물을 정비하고, 화홍문 앞 석축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려는 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원
- (3) 신청내용<동장대 정비 및 화홍문 안전휀스 설치>
  - 위치 : 동장대
  - 내용
    - 1) 동장대 정비
      - 바닥 황토경화포장(2726.7㎡)
      - 담장 기와 및 헐문 지붕보수, 바닥 방전 보수
      - 가설물(가설창고, 사무소 등) 설치
    - 2) 화홍문 안전휀스 설치
      - 구간길이 : 40m
      - 높이 : 1.35m(경계석 포함)
      - 재질 및 색상 : 알루미늄 금속 재질, 무채색 계열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 의견
  - 동장대 바닥은 경사가 급하여 우천시 패임 부분이 많으며 담장의 홍두께

흙이 빠져나가 수키와가 교란되어져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

- 화홍문에서 창룡문 방향으로 학교가 있어 화홍문을 지나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과 국내는 물론 일본·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화성의 대표적인 시설이나 화홍문을 좌우로 통행하는 보행 통로는 2.28m이며 지대석 상부로부터 하천 바닥박석까지 3.85m로 건물 2층 이상의 높이로 통행에 위험한 상태로 안전휀스의 설치가 필요함

## (2) 언론 보도 사항

- 2012. 6. 28 수원화성 원칙없는 보수·복원으로 원형 훼손(경인일보)
  - 동장대 바닥이 흙이 아닌 강회로 포장하여 원형과 상이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화홍문 안전휀스는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시행



### 3. 서울 한양도성(종로구)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73m 이격된 곳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중구 등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 종로구 부암동 254-7(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3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46.00m<sup>2</sup>
    - 건축면적 : 198.16m<sup>2</sup>
    - 연면적 : 784.28m<sup>2</sup>
    - 규모 : 지하 2층, 지상 2층(최고높이 약 10m)
    - 용도 : 근린생활시설 등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4. 서울 한양도성(중구)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되어 있으나 한양도성의 연결된 유적지로 시굴조사 결과 성곽 유구가 확인되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 서울 한양도성 전체 구간 18.627km(잔존구간 13.156km, 멸실구간 5.471km) 중 문화재 미지정 구간은 5.6km(전체구간의 약 30%)
- ※ 문화재구역으로 미지정된 지역(한양도성 추정 유적지)에서 건설공사 시에는 유적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적보존방안에 대한 매장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12.8.24) 보존조치가 결정됨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유구가 발굴된 지역은 현재대로 유지하여 유구를 보존하고 그 외 부지에 건축(지하 2층, 지상 5층)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 중구, 종로구 등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96-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한양도성 연결된 유적)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13.70㎡

- 건축면적 : 340.09m<sup>2</sup>
- 연 면 적 : 1,876.72m<sup>2</sup>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5층(최고높이 약18.9m)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등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유적보존 및 활용방안
  - 성곽 연결선으로 확인된 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신축을 계획하지 않아 성곽 연결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주 도로로부터 약 9m까지)
  - 잔존석은 흙으로 덮어서 원형 그대로 보존
  - 표지석 및 설명판, 입체모형도 등을 설치

## 라. 참고사항

- (1) 장충동1가 96-1 유적 보존조치 내용(2012.8.28/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통보)
  - 발굴완료 조치 관련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철저 및 원상복구 철저
    -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 준수
  - 유구보존 관련
    - 유구보존내용(매장문화재분과 제8차, 2012.8.24)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
        - .. 유구는 남아있는 부분이 적으나 지형은 원형대로 잘 남아 있음
        - .. 한양도성 성벽 통과선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발굴은 필요치 않음
        - .. 보존필요
        - .. 도성 동남측 성벽선이 분명히 확인되어 보존대책을 마련함이 좋겠음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 결과 : 91.38점(2012.7.31.)
        - .. 조사결과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체성 지대석 받침이 확인되어, 한양도성 멸실구간의 통과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 .. 국가사적으로 확대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서울성곽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대책 수립이 필요함
- (2) 한양도성 연결된 유적 발굴 후 보존조치 현황(발굴제도과)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89-1번지(2010.7.29)
    - 확인된 성곽에 대해서는 보존조치토록 하고 추정선 지역에 대한 형질 변경 시에는 현상변경 신청 등 관계부서(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함

○ 서울 창덕여중 증·개축 부지 내 유적(2011.3.2)

- 서울성곽의 복원을 위해 성곽 외곽선으로부터 안팎으로 이격거리는 최소한 20m 확보, 발굴된 성곽 유구는 복원때까지 복토 후 원상태로 보존

(3) 발굴유구 보존에 대한 서울시 의견(2012.8.21)

가. 발굴유구 보존 및 토지매입

- 장충동 일대는 성곽 유존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지역이며 서울시에서도 2009년 학술용역을 통해 장기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에 의한 토지매입계획 수립(2009년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 장충동 96-1번지는 노출된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 우선하여 국비투입 매입 요구(매입 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재발방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한양도성 유존구간 표시)

-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사항이라는 점이 건축 행위 허가에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토지매수자의 개발계획 수립에 제동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청장 사전 검토대상지역임을 표시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제도화
- 서울시에서 2012.6.27. 국토해양부 및 문화재청에 위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규제 신설로 인지하고 있어, 중앙부서인 문화재청의 검토의견과 토지이용요구제심의회의 이행 필요 회신(12.7.13.)

다.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검토

-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한양도성 기저부로부터 내부 10m까지는 문화재 구역으로 설정
- 문화재구역선에서 내외 2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 예정
- 문화재구역 예정 국유지에 대한 문화재청으로 관리권 이전을 요청하여 자산매각에 따른 시민피해를 미연에 방지(341필지 349,734㎡)

(4) 한양도성 문화재 지정현황 등

○ 지정현황

- 지정 별 : 사적 제10호 (1963. 1.21. 지정)
- 지정면적 : 2,045필지 563,882㎡

- 지정구역 218필지 25,246㎡, 보호구역 2,045필지 538,636㎡
- 전체 구간 : 18.627km(잔존구간 13.156km, 멸실구간 5.471km)
- 미지정 구간 : 5.6km(전체구간의 약 30%)
- 문화재구역 지정 현황
  - 성벽을 기준으로 성 내외측으로 20~30m 영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승례문, 흥인지문, 오간수문, 봉수대는 별도 지정)
  - 현존 성벽은 대부분 지정되어 있으나, 대한상공회의소, 창덕여자중학교, 사직동 주택가, 경신고등학교, 혜화동 두산빌라 주변, 장충동 주택가 등의 잔존 성벽은 미지정
  - 성벽 미존재 구간 미지정(최근 발굴조사로 노출된 잔존 성벽도 미지정)
- 문화재구역 미지정구간 현황
  - 성벽잔존구간, 발굴조사후 유구노출구간, 발굴조사영역 내 유구멸실구간
    - 면적 340필지 78,670㎡(사유지 266필지 44,213)/토지매입비 2,335억
  - 공공 교육시설 성벽추정구간, 성벽잔존구간
    - 면적 541필지 125,834㎡(사유지 248필지 48,869㎡)/토지매입비 1,636억
  - 주거사업시설 성벽추정구간
    - 면적 346필지 75,748㎡(사유지 193필지 33,814㎡)/토지매입비 2,137억
- 문화재구역 미지정구간 보존관리 현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건설공사시 시발굴조사 조사(문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관한법률 제11조)
  -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로 건설공사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문화재보호법 제15조제2항제3호)

## 마. 의결사항

- 보류
  - 서울시의 한양도성 보존관리계획 마련 후 재검토

## 5.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m 이격된 곳의 기존 건물(약 3층 규모/창고,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풍납동 토성 성곽 외부지역에서의 소규모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 2001.4.16. '토성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보호구역 경계지상 7.5m 지점에서 양각 27°선 이내로 건축을 제한'하는 지침이 서울시와 송파구에 통보되어 현재까지 이 지침에 따라 송파구에서 처리해 오고 있음
- 신청건물은 양각 27°선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관계전문가 3인의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결과' 문화재 및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72-1 등
- (3) 신청내용<도시형생활주택 신축>
  - 위치 :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7-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0m 이격)
    - 풍납토성 권역별 보존대책 5권역 : 성곽 관련된 해자, 백제유적 확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며, 소규모 재건축시 시굴조사, 대규모 재건축시 발굴조사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387.60㎡
    - 건축면적 : 800.22㎡

- 연 면 적 : 3,380.65m<sup>2</sup>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7층 1동(최고높이 약 21.6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92세대), 근린생활시설

##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의견(2012.8.7)

- 신축예정지(풍납동 397-1)는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 계획”에 의거 토성의 해자 혹은 그 외곽지역(5권역)에 위치한 관계로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지역으로 판단됨
- 상기 보존관리 계획에 따라 동 지역은 시굴조사 후 백제문화층이 확인될 경우 건축 설계변경 또는 발굴조사가 필요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재검토

## 6.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출입

###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공개제한지역을 출입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송산리 고분군 기초자료집’ 발간을 위한 고분 내부 촬영 및 자료 조사를 위하여 고분군 내부를 출입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97.7월 송산리고분군(5호, 6호, 무녕왕릉)는 내부 관람 중지 및 폐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 등
- (3) 신청내용<고분군 출입>
  - 출입지역 : 4호분, 5호분, 6호분, 무령왕릉
  - 출입목적 : ‘송산리 고분군 기초자료집’ 수록을 위한 고분 내부 촬영 및 자료조사
  - 출입자 : 공주시 및 공주박물관 사업 담당자, 촬영 작가

### 라. 검토의견

- 공주시에서 고분군 출입시 보호조치 사항으로 제출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출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존전문가 입회 하에 고분 출입, 고분 출입시 방진복, 방진화, 마스크, 멸균장갑 착용, 고분 출입은 최대 3명으로 제한, 외부 기상이 눈비가 오는 경우 고분출입 금지, 내부 온도 변화가 2℃ 이상 발생시 작업을 중단



## 마. 참고사항

### (1) 송산리 고분군 공개제한 등

#### 가. 공개제한 및 보존조치 현황

| 년도        | 내 용                                                                                                                      |
|-----------|--------------------------------------------------------------------------------------------------------------------------|
| 1963      | 송산리고분군(1~6호분) 사적 제13호 지정                                                                                                 |
| 1971      | 6호분 배수공사 중 무령왕릉 발견                                                                                                       |
| 1995      | 고분군 내 심각한 누수로 인한 남조류 발생 등 고분의 구조적인 문제 발생                                                                                 |
| 1996~1997 | 송산리고분군 종합정밀조사 실시(공주대)<br>- 누수원인 규명, 벽체 거동 상황 및 구조안전 점검<br>- 조류의 제거 및 공기조화 시설 연구                                          |
| 1997.7.15 | 송산리고분군(5·6호분, 무령왕릉) 내부 관람 중지                                                                                             |
| 1998      | 공기조화 설비 설치<br>-에어컨 및 제습기 설치(문제점 : 고분 내부 결로 현상 발생)                                                                        |
| 1999      | 보수공사 실시<br>- 누수방지용 강회다짐 공사<br>- 무령왕릉의 관람을 위한 전실공간의 퇴매움 공사<br>- 봉분재조정                                                     |
| 2000      | 송산리고분군 2차 정밀조사 실시(공주대)<br>- 보수공사 전·후·내·외부현황 대비분석<br>- 누수여부, 구조거동 및 안전상태 계측<br>- 고분군 주변 환경 상시모니터링<br>- 남조류 제거 후 생태계 변화 조사 |
| 2004      | 공기조화 설비 개선<br>- 향온제습기, 배전 및 배관, 실외기 설치<br>- 문제점 : 설비의 내부 설치에 의한 설비조작 불편 및 설비 등에 의한 고분 내부 미관 저해                           |
| 2010      | 백제 송산리 6호 벽화고분 보존 연구 실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2011      | 송산리고분군 보존방안 연구 실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br>- 고분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구조 안전진단<br>- 6호 벽화 토벽체 안정화 및 응급 보존처리, 벽화 제작기술 연구                  |

#### 나. 공개제한지역 출입시 보호조치 사항

- 보존전문가 입회 하에 고분 출입
- 고분 출입시 방진복, 방진화, 마스크, 멸균장갑 착용
- 고분 출입은 최대 3명으로 제한하고, 외부 기상이 눈비가 오는 경우 고분 출입 금지
- 내부 온도 변화가 2℃ 이상 발생시 작업을 중단

#### 다. 고분군 출입에 대한 연구기관 의견(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용재 교수)

- ‘송산리고분군 기초자료집’ 발간에 따른 사진촬영을 위한 고분군 출입으로

고분군 출입시의 보호조치만 이루어진다면 고분군 보존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

라. 현황사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 7. 경주 김유신묘 주변 중학교 체육관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주변 중학교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김유신묘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400m 이격된 1구역에 경주여중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김유신묘(사적 제2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산7-10
- (3) 신청내용<경주여중 내 체육관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악동 255 외 9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40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pvc기와 및 판넬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연면적합계 2,078.22m<sup>2</sup>
    - 건축용도 : 체육관
    - 최고높이 : 11.2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건은 경주 김유신 묘에서 남동측으로 400여m 이격된 경주여자중학교 내 1구역(보존구역)에 건축면적:4,238.90m<sup>2</sup>, 높이:11.2m의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발굴 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교사 뒤편에 증축되어 김유신묘에서 인지되지 않고, 기존건축물보다 높이가

높지 않아 경주 김유신 묘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 조건부가결

- 건축물 외관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한 후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 8. 경주 경덕왕릉 내 배수로 정비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23호 「경주 경덕왕릉」 내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경덕왕릉 문화재구역 내에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경덕왕릉(사적 제23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산8번지, 덕천리 산7 일원
- (3) 신청내용<배수로 정비>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산7, 산8 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가)구간 자연석 배수로 설치 L=23.0m(0.5 0.5)
    - (나)구간 자연석 배수로 설치 L=61.0m(0.5 0.5)
    - 횡배수로 설치(4개소) L=5.8 + 4.3 + 2.3 + 3.0=15.4m (0.2 0.15)
    - PE관(∅300) 설치 L=6.0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경주 경덕왕릉 내 진입로 주변에 석축 배수로를 신설((가로0.5m\*세로0.5m)길이:84m)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지조사 결과, 우수에 의한 지반 침식 등이 인지되지 않아 과도하게 인위적인 석축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9. 관문성 주변 제조시설 건립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에서 제조업소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관문성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200m 이격된 1구역에 제조업소를 건립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일원
- (3) 신청내용<제조시설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51-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일반철골, 판넬조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연면적합계 480㎡
    - 건축용도 : 제조시설
    - 최고높이 : 11.2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관문성에서 북측으로200여m 이격된 1구역(보존구역)에 기존에 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를 절·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면적:480㎡, 높이:11.2m의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1구역(보존구역)에서 절·성토가 이루어지고 건축물의 규모가 커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관문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0.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6차회의('12.6.13)에서 역사문화환경 훼손으로 부결된 바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행주산성(사적 제56호)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m 이격)
  - 내용

| 구분   | 1차심의('12.6.13/부결) | 금번심의('12.9.12) | 비고        |
|------|-------------------|----------------|-----------|
| 사업면적 | 378.13㎡           | 좌동             |           |
| 건축면적 | 177.78㎡           | 222.20㎡        | 44.42㎡ 증  |
| 연면적  | 246.02㎡           | 438.06㎡        | 192.04㎡ 증 |
| 규모   | 2층(지상1,지하1)       | 2층(지상1,지하1)    |           |
| 최고높이 | 9.6m              | 4.8m           | 4.8m 감    |
| 주차대수 | 3대                | 좌동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일반철골구조         |           |
| 용도   | 단독주택              | 근생시설           |           |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07/문화재위원 ○○○)

- 신청지는 전통가옥이 형성되었던 지역이나, 현재는 일부 증·개축된 건물도 함께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신청 건물은 기준안에 의거 현상대로 보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단층 전통가옥의 외형을 갖추는 형식으로 검토함이 좋겠음(건물평수가 다소 크다고 봄)
- 인접한 지역의 전통가옥은 조사하여 가치성 평가가 필요한 한옥이 있음(장씨가옥)

## 마. 의결사항

- 보류
  - 건축물의 규모 등을 조정 후 재검토

## 11. 고양 행주산성 주변 시정연수원 증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고양시정연수원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고양시정연수원 증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행주산성(사적 제56호)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일원

(3) 신청내용<시정연수원 증축>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4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42m 이격)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 내용

| 구분   | 기존면적(m <sup>2</sup> ) | 증축면적(m <sup>2</sup> ) | 계      | 비고            |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화강석         |                       |        |               |
| 지상1층 | 328                   | 260.57                | 588.57 | 교육연구시설/근린생활시설 |
| 지상2층 | 302.34                | 294.77                | 597.11 | 교육연구시설        |
| 대지면적 |                       | 22,040                |        |               |
| 건축면적 |                       | 640.49                |        | 기존포함          |
| 연면적  |                       | 1,185.68              |        | 기존포함          |
| 건폐율  |                       | 2.91%                 |        |               |
| 용적율  |                       | 5.38%                 |        |               |
| 최고높이 |                       | 10.6m                 |        | 높이 증가 없음      |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금회 고양시정연수원 건축물을 증축하여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대상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제2구역에 해당함(평지붕8m, 경사지붕12m)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2.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1)

###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 (3) 신청내용<참나무 벌채>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산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5m 이격)
  - 사업내용

| 지번 | 임반  | 소반 | 면적    | 산림현황          |                   | 벌채(2012)                  | 숲가꾸기(2015~18)                                |
|----|-----|----|-------|---------------|-------------------|---------------------------|----------------------------------------------|
|    |     |    |       | 수종            | 총축적               |                           |                                              |
| 산1 | 1-0 | 1  | 8.8ha | 상수리<br>(참나무류) | 820m <sup>3</sup> | 참나무류<br>802m <sup>3</sup> | 2015년 움씩갱신보육<br>2018년 천연림가꾸기<br>2022년 천연림가꾸기 |
|    |     |    |       | 소나무           | 81m <sup>3</sup>  |                           |                                              |
|    |     |    |       | 해송            | 93m <sup>3</sup>  |                           |                                              |
|    |     |    |       | 기타활엽수         | 59m <sup>3</sup>  |                           |                                              |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3.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2)

####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조○○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 (3) 신청내용<참나무 벌채>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산17(문화재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지번  | 임반  | 소반 | 면적    | 산림현황          |                   | 벌채(2012)                  | 숲가꾸기(2015~18)                                |
|-----|-----|----|-------|---------------|-------------------|---------------------------|----------------------------------------------|
|     |     |    |       | 수종            | 총축적               |                           |                                              |
| 산17 | 1-0 | 1  | 2.6ha | 상수리<br>(참나무류) | 160m <sup>3</sup> | 참나무류<br>154m <sup>3</sup> | 2015년 움씩갱신보육<br>2018년 천연림가꾸기<br>2022년 천연림가꾸기 |
|     |     |    |       | 소나무           | 25m <sup>3</sup>  |                           |                                              |
|     |     |    |       | 해송            | 43m <sup>3</sup>  |                           |                                              |
|     |     |    |       | 기타활엽수         | 22m <sup>3</sup>  |                           |                                              |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4. 부안 진서리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안 진서리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6차(2012.6.13) 심의 시 부결되어 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명 : 부안 진서리 요지(사적 제70호)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56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전북 진서면 진서리 584-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
  - 사업내용

| 구분   | 6차 심의(부결)     | 금차 심의           | 증감      |
|------|---------------|-----------------|---------|
| 용도   | 단독주택          |                 |         |
| 구조   | 목조            |                 |         |
| 지붕   | 경사지붕(아스팔트 싱글) |                 |         |
| 건축면적 | 76.11㎡        | 75.81㎡          | 0.3㎡ 감  |
| 높이   | 5.195m(지상1층)  | 5.75m(지상1층)     | 0.55m 증 |
| 조경   | 없음            | 사철나무, 연산홍, 주목 등 |         |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9.05/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부안 진서리 요지의 북측 지정구역에서 110여m 이격된 1구역(보존 구역)에 면적 75.8㎡, 높이 5.75m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문화재가 저수지 제방에 일부 성토되어 있으나 이는 넓은 유적분포 범위의 일부이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건물 신축은 부안 진서리 요지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 15. 경주 천군동 사지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82호 「경주 천군동 사지」 주변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천군동 사지 문화재구역 주변 1·2·3·4구역 및 인접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천군동 사지(사적 제82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군동 548 외 일원
- (3) 신청내용<천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1617-1 등 680필지(1·2·3·4구역, 인접)
  - 사업내용 : 토지구획정리

| 분 류                               | 부지면적(m <sup>2</sup> ) | 건축면적(m <sup>2</sup> ) | 연면적(m <sup>2</sup> ) | 비고 |
|-----------------------------------|-----------------------|-----------------------|----------------------|----|
| 관리시설(도로, 주차장)                     | 80,823                | -                     | -                    |    |
| 휴양시설(호텔,콘도,숙박촌,펜션,스파)             | 328,186               | 43,102                | 142,578              |    |
| 특수시설(공예촌, 역사박물관)                  | 60,708                | 10,660                | 14,457               |    |
| 편익시설(복합쇼핑몰, 테마잡화몰, 수변카페, 온천수공급시설) | 112,487               | 24,588                | 48,445               |    |
| 유희시설(키즈랜드)                        | 45,985                | 4,469                 | 8,938                |    |
| 기타1(저수지, 하천)                      | 49,601                | -                     | -                    |    |
| 기타2(공원, 녹지)                       | 84,960                | -                     | -                    |    |
| 합 계                               | 762,750               | 82,819                | 214,418              |    |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천군동 사지 주변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천군동 사지 주변 1구역(보존구역), 2구역(경사지붕 7.5m 이하), 3구역(경사지붕 12m 이하)의 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 내에 박물관·전통숙박촌·펜션·공예촌·쇼핑몰·카페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문화재에서 인지되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2) 현상변경허가 신청 추진 경과

- '02.09.27 현상변경 허가 신청 및 **심의결과** - **보류**(현지 조사 후 재검토)
  - 도시계획시설 보문유원지 조성 : 785,838m<sup>2</sup>
- '02.10.18 현상변경 허가 재신청 및 **심의결과-부결**(유적보존을 위하여 사업 재검토)
  - 도시계획시설 보문유원지 조성 : 785,838m<sup>2</sup>
- '07.03.21 현상변경 허가 신청 (보문유원지 천군지구 시설조성 : 698,431m<sup>2</sup>)
  - 주요시설 : 문화예술가촌, 민속공예단지, 영어마을, 청소년수련마을, 연수원 등
- '07.04.13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문화재 경관 저해)
- '10.12.18 발굴제도과 의견(발굴제도과-17697)
  -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이행 후 보완 제출
- '10.12.29 현상변경 신청서류 **보완 요구 및 반려**(보존정책과-6948)
- '11.03.17 현상변경 허가 신청
  - 보문유원지 시설 조성사업
    - \* 주요시설 : 도로, 공원, 광장, 테마카페, 푸드클러스터, 스파단지, 잡화몰, 펜션, 숙박촌, 편익및관리시설, 유희시설, 신라예술촌, 공예품 전시장, 역사박물관 등
- '11.04.13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역사문화 환경 훼손)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6.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본 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시(2012.8.8.)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건물높이를 당초 21m에서 20m로 낮추고 건물 입면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허○○
- (2) 대상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등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 종로구 와룡동 10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m 이격)
    - 허용기준 3구역 : 평지붕 14m, 경사지붕 17m
  - 사업내용

| 구분   | 1차 심의(8.8)   | 금회           | 비고      |
|------|--------------|--------------|---------|
| 대지면적 | 152.00㎡      | 좌동           | -       |
| 건축면적 | 105.44㎡      | 103.99㎡      | 감 1.89㎡ |
| 연면적  | 546.65㎡(지상층) | 519.55㎡(지상층) | 감 27.1㎡ |
| 건축규모 | 지상 5층, 옥탑    | 좌동           | -       |
| 건물높이 | 21m          | 20m          | 감 1m    |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좌동           | -       |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7.23/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종묘에서 약 70여m 이격되고 창덕궁 돈화문 앞 도로에 연접하여 지상 5층, 높이 21m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돈화문에서 인지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의 미관지구로서 건물높이 20m의 근린생활시설은 제한되고 있고, 현 부지 도로 건너편에도 2011.6.20.에 건물높이 20m로 허가된 바 있어, 높이를 20m 이하로 조정하고, 외관에 있어서도 문화재와 어울리는 디자인·재료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 조건부가결

- 건물 외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 후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 17. 종묘 내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자 통로 등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내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터널 내부 자전거도로 및 터널 상부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허가사항(변경)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시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터널내 자전거도로 및 상부 복원 담장선을 따라 보행자 통로(창덕궁~원남동 사거리)를 설치하고자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 (3) 기 허가사항 : (2011.1.18, 7.25, 8.11, 10.17)
  - 규모 : 연장 820m, 폭 28.6~33.7m (왕복 6차로)
  - 도로확장 : 폭 23m(4차로) → 28.6m ~ 33.7m
  - 지하차도 연장 : 342m / box : 300m, L형 옹벽 : 32m, 폭 28.9m
  - box 상부 흩덮기 후 수목식재 및 문화재 복원
    - 수림 형성 : 교목이식 325주, 교목제거 245주, 교목식재 378주(관목제외)
    - 북신문 복원 (1칸×1칸, 3량가), 사고석 담장(해체L=644m, L=496m) 복원
    - 황토포장 : 680.30m<sup>2</sup>
- (4) 변경신청 내용
  - 터널 내부에 자전거도로(1.5m) 및 장애인 휠체어(1m) 이동 통로 설치
  - 터널 상부에 보행자(황토포장) 통로 설치 : 길이 248m, 폭 4m, 면적 992m<sup>2</sup>
  - 터널 시·종점부 계단설치 : 길이 197m, 폭 2m

## 라. 의결사항

###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8. 강화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랑성(사적 제130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45-34(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0m 이격)
  - 사업내용

| 구분    | 1차신청<br>2012.2.20(부결)           | 2차신청<br>2012.6.20(반려) | 금번신청<br>2012.8.2(심의) | 비고       |
|-------|---------------------------------|-----------------------|----------------------|----------|
| 부지면적  | 625㎡                            | 좌동                    | 좌동                   | 좌동       |
| 건축면적  | 94.77㎡                          | 좌동                    | 114.66㎡              | 19.89㎡ 증 |
| 연면적   | 94.77㎡                          | 좌동                    | 114.66㎡              | 19.89㎡ 증 |
| 높이    | 5.6m                            | 좌동                    | 5.3m                 | 0.3m 감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한식기와              | 황토벽돌,한식기와            |          |
| 성토/절토 | 396.2㎡/226.1㎡                   | 좌동                    | 좌동                   |          |
| 기타    | 석축공사 74㎡,<br>배수공사 49m,<br>맨홀 3개 | 좌동                    | 좌동                   |          |

### 라. 의결사항

- 부결
  - 삼랑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9. 강화산성 주변 컨테이너 창고 설치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컨테이너 창고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한○○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컨테이너 창고 설치>

-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439-3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m 이격)

\* 1구역(보존구역)과 7구역(그외지역)에 걸쳐 있음

- 사업내용

- 사업면적 495㎡, 설치면적 36㎡(18㎡×2개동), 높이2.3m

###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

- 위 신청 건물은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역(보존지역)임
- 신청필지는 문화재로부터 약430m 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음
- 원편 인접지역은 7구역(그외구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0. 강화산성 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숲가꾸기 사업>
  -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산36-1(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9.2ha
    - 내용 : 천연림개량, 임내정리, 산물수집, 가지치기 등, 화관목(산철쭉) 식재
    - ※ 2011.9.14. 기허가내용
    - 사업면적 9.57ha (임내정리 7.58ha, 산물수집 1.99ha)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강화읍 관청리 산36-1번지를 포함한 북산 일대는 아까시 나무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으로 산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1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12월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완료하지 못하였고 아까시 고사목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상 변경 허가를 재신청함
- 숲가꾸기는 기존 밀생되어 있는 수목을 우량 대경목 생산을 위한 목적이며

수목을 일정한 간격으로 솎아주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불량목 제거에 따른  
입목 생장 촉진 등 산림의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산철쭉은 기존 수목 하층에 식재함으로써 문화재 관람을 위해 찾는 방문객  
들에게 보다 쾌적한 경관성 제공이 가능해짐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1. 강화산성 주변 강화군청사(별관) 건립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강화군청사(별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 강화군청사(별관) 건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강화군청사(별관) 건립>
  - 위치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10m 이격)
  - \* 허용기준상 6구역(5층이하 / 평지붕17m, 경사지붕21m)
  - 사업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지면적  | 9,328.00㎡                   |           |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의 청사)         |           |
| 건축면적  | 2,818.24㎡                   |           |
| 연 면 적 | 지상 8,599.26㎡ / 지하 1,756.48㎡ |           |
| 규 모   | 지상 4층 / 지하 1층               |           |
| 최고높이  | 21.60m                      |           |
| 건 폐 율 | 30.21%                      | 법정 : 60%  |
| 용 적 륜 | 92.19%                      | 법정 : 250% |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본청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행정조직 확대와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팽창에 대처가 어려운 상태로서 향후 여건변화에 대비하고자 함
- 본 청사와 연계되고, 역사문화도시에 부응하는 고품격의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편익 및 복지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재검토

## 22. 김포 문수산성 주변 수종갱신 및 화장실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주변 수종갱신 및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포 문수산성 주변 수종갱신 및 화장실을 신축하려는 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문수산성(사적 제139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1번지
- (3) 신청내용<수종 갱신 및 화장실 신축>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1-1번지 등 3필지
  - 내용
    - 1) 수종갱신
      - 부지 면적 : 1,000m<sup>2</sup>
      - 벌목 수량 : 65주(외송 30, 참나무 30, 기타 5)
      - 갱신 수량 : 150주(잣나무 묘목 h=1.5m)
    - 2) 화장실 신축
      - 부지면적 : 323m<sup>2</sup>
      - 건축면적 : 47.1m<sup>2</sup>
      - 건축규모 : 1동(지상 1층)
      - 최고높이 : 5.2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3.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등 건립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주변에서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옥산서원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80m 이격된 1구역에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을 건립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이○○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옥산서원(사적 제154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09 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한식토기와(경사식)
- 최고높이 : 6.7m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연면적합계 96.49㎡
- 건축용도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립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한식토기와(경사식)
- 최고높이 : 6.2m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연면적합계 136.0㎡
- 건축용도 : 일반음식점

- 토목공사부분

- 석축쌓기 : 57m - H=0.6m ~ 1.0m · 대지내 성토 : 0.2m ~ 1.3m
- 구거점용 : 36.0m<sup>2</sup>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주 옥산서원에서 서측으로 80여m 이격된 1구역(보존구역)에 건축면적:96.49m<sup>2</sup>, 높이:6.7m의 단독주택과 건축면적:136.0m<sup>2</sup>, 높이:6.2m의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문화재와 연접한 곳에 주택과 음식점이 신축되는 것은 옥산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4. 북한산성 주변 국녕사 내 종각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국녕사 내 종각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북한산성 국녕사 내 종각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성북·강북·도봉구 일원
- (3) 신청내용<종각 설치>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16-8(문화재구역으로부터 93m 이격)
  - 사업내용

| 구분   | 기존                                    | 신청      | 비고      |
|------|---------------------------------------|---------|---------|
| 건축면적 | 377.75㎡                               | 9㎡      | 386.75㎡ |
| 연면적  | 290.63                                | 9㎡      | 299.63㎡ |
| 높이   | 12.325m                               | 10.835m |         |
| 평면   | 정면1칸×측면1칸의 정방형                        |         |         |
| 기단   | 콘크리트타설 후 외부는 화강석 기단석 설치(화강석판석 두께30mm) |         |         |
| 기둥   | 직경 360mm 원기둥                          |         |         |
| 구조   | 동기와 잇기                                |         |         |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5. 경주 효공왕릉 등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등 주변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효공왕릉 및 경주 보문리사지 등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약 300m 이격된 1구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효공왕릉(사적 제183호), 경주보문리사지(사적 제390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배반동 일원 외
- (3) 신청내용<도시계획 도로 개설>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99번지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L = 253.0m, B = 8.0m
    - 토 공 : 흙깎기 40m<sup>3</sup>, 흙쌓기 3,744m<sup>3</sup>
    - 배수공 : 흙관(D600) 15본, 날개벽 6개소
    - 포장공 : 아스팔트 B=6.5, L = 253.0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경주 효공왕릉과 보문리 사지에서 300여m 이격된 1구역(보존구역)에 폭 8m, 길이:253m의 마을 연계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문화재에서 잘 인지되지 않고 옹벽 없이 토사 성토로 도로를 개설하며, 연결도로보다 낮게 구성되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 26. 구리 동구릉 주변 동구릉역사공원 조성사업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동구릉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구릉 주변 동구릉역사공원 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99년부터 골프연습장이 있던 곳으로 동구릉의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10년 3월부터 10월에 걸쳐 구리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 바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동구릉역사공원 조성사업>
  - 위치 :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82일원(문화재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사업부지면적 : 40,747㎡, 절토 1,000㎡, 성토 27,000㎡
    - 산책로 및 광장 조성, 전시가벽(1식), 조형물(4식), 공원등(61개소)
    - 쉼터(9개소), 등의자(18개소), 해설판(9개소)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구 골프연습장 부지의 산림복원 및 역사경관 회복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임
- 신청부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1층 4미터/8미터 가능)으로 건축물은 없으나 토지형질변경이 있어 허가신청함
- 착공은 2018년으로 예상되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2012.9.입안)을 위하여

금번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함

- 실시설계는 수목과 조형물, 안내판 등의 형태와 크기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예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우선 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목, 조형물, 안내판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재검토

## 27. 고양 서삼릉 주변 우량농지 개량사업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주변 우량농지 개량 사업을 위하여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삼릉 주변 우량농지 개량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신청지가 주변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은 이유로 잦은 침수로 인하여 농사가 어려워 성토하여 밭으로 사용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외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번지 외
- (3) 신청내용<우량농지 개량사업>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 외 1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m 이격)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1,989㎡, 높이 1m, 성토량 11,680㎥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성토높이를 최소화하여 사업시행

## 28. 김포 장릉 주변 인천검단지구 광역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에 광역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포 장릉 주변에 인천검단지구 광역 도로 개설을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2차례 부결되어 당초 계획을 수정 보완한 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79(풍무동 산141-1)
- (3) 신청내용<도로 개설>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모동 산141-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0m 이격)
  - 내용
    - 6차로 광역도로 신설(전체 구간 4,7km 중 1.98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관통)

| 구분                               |       | 허가 신청(1차, '11.6.8/부결) | 허가 신청(2차, '12.5.9/부결)        | 금회 신청                                 | 비고 (2차vs금회)     |
|----------------------------------|-------|-----------------------|------------------------------|---------------------------------------|-----------------|
| 사업구간<br>(역사문화<br>환경 보존<br>지역 관통) | 총구간   | 2,040m                | 1,980m                       | 1,980m                                | 좌동              |
|                                  | 1구역   | 406m                  | 349m                         | 349m                                  |                 |
|                                  | 2구역   | 942m                  | 869m                         | 869m                                  |                 |
|                                  | 3구역   | 214m                  | 222m                         | 222m                                  |                 |
|                                  | 4구역   | 478m                  | 443m                         | 443m                                  |                 |
| 시공 방법                            | 1구역   | 절토후<br>지상노출           | 터널(360m) 개설                  | 터널(360m) 개설                           | 좌동              |
|                                  | 2구역   | 전구간 5m이상<br>성토후 개설    | 지하차도(230m)<br>개착(639m)       | 지하차도(550m),<br>배기구(200m),<br>개착(119m) | 지하차도<br>320m 증가 |
|                                  | 3,4구역 |                       | 표토 정지 후 포장                   | 표토 정지 후 포장                            |                 |
| 소음 방지                            |       | 저감대책 없음               | 도로 표면 소음저감 포장 및 주변<br>조경수 식재 | 도로 표면 소음저감 포장 및 주변<br>조경수 식재 증가       | 2구역<br>47→35db  |

## 라. 참고사항

- (1) 금회 신청 관련 궁능문화재과 의견('12.09.06/김포 장릉 보존관리 부서)
  - 금번 현상변경 허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설예정 도로를 터널화하여 기존보다 소음발생은 다소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나, 광역도로 개설 예정지가 김포장릉과 근거리에 인접하여 있고 능역의 진입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왕릉의 지형훼손 및 능침공간의 엄숙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 (2) 2차 신청시 현지조사 의견('12.04.23/문화재전문위원 ○○○)
  - 해당문화재는 국가 제 202호 사적으로 200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릉으로 광역도로공사가 문화재 보호지역 전면부 80-200M에 인접하여 있어 도로개설시 상당한 영향이 예측됨. 도로개설예정지는 능행차시 제레동선에 인접하고 있으며 능역의 진입공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정비를 통한 능제의 제레재현 및 각종 능제행사, 체험학습이 예측되는 지역임.
  - 내백호와 외백호 사이를 횡단하는 6차선도로는 소음의 발생과 능역의 중요 풍수형국에 해당하는 내백호와 외백호를 단절시켜 전통경관적(풍수적) 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전면부의 열린 경관 훼손은 물론 능역과 전면부 안산(案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됨.
  - 장릉은 능침에서 전면부 조망인 조산(朝山:계양산)의 우수한 가시권이 확보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보존대책도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임. 장릉 전면부의 현상변경기준안의 1구역, 4구역 전면 고층 인공구조물로 인한 능침 전면 공간 차단 및 조산(朝山)의 보존대책이 요구됨. 최소한 능침에서 수평각 60도의 전면부는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능역 내 두 개의 연지(蓮池)가 자연생태자원을 잘 갖추고 있어 철새 등 천연생태 자원이 많아 생태경관으로 높이 평가 받는 지역임.
  - 지하 터널을 통한 도로 노선 설정시 능침공간의 정숙함과 신성함의 장소성이 훼손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능침사찰이었던 금정사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함. 도로개설시 금정사와 능역과 단절된 공간이 될 우려가 있음.
  - 가능하면 능역의 외백호, 외청룡 지역 외곽지역으로 순회하는 노선이 가장 바람직함. 부득이 한 경우 진입공간과 제레동선의 보전을 위해 외백호 지역과 전면부를 전면 지하 터널화하는 방안이 있으나 능침공간의 정숙함과 신성한 공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3) 2차 신청시 궁능문화재과 의견('12.05.03/김포 장릉 보존관리 부서)

- 광역도로 개설 예정지가 김포장릉과 근거리에 인접하여 있고 또한 능역의 진입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왕릉 지형훼손 및 소음발생 등으로 인한 능침공간의 엄숙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김포 장릉은 능제복원 기본계획(2009.12)에 의거 현재 왕릉 동측에 위치한 진입로 및 주차장을 폐쇄하고 남동측에 진입공간(진입로, 방문자 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단절된 지형(용맥)을 복원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9. 파주 삼릉 내외 가로등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내외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삼릉 인접지역에 가로등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 도로확충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신청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는 지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 소재지 : 경기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15-1번지
- (3) 신청내용<가로등 설치>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번지 285호(문화재구역 포함)
  - 사업내용 : 높이 10m, 5기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주민 야간통행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가로등 설치임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30. 금정산성 주변 하부 지하도로 산성터널 굴착

### 가. 제안사항

부산시 금정구 소재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주변 지하도로 산성터널 굴착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 금정산성 하부에 지하 도로 터널 굴착을 위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일원

(3) 신청내용<지하도로 산성터널 굴착>

-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금정구 장전동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

○ 사업내용

- 사업구간 : 부산시 북구 화명동 ~ 금정구 장전동

- 규모 : L=5.62km(왕복4차로)

- 주요시설물

- 터널 : L=4.88km, 통합영업소 : 본선 1개소, 교차로 1개소

- 발파영향검토 : 최소토피구간(218.7m) 0.163cm/sec

※ 문화재 및 진동 예민 구조물 발파 진동 허용치(0.2~0.3cm/sec)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31. 금정산성 주변 산성마을 배수지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관로설치 등(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부산시 금정구 소재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주변 산성마을 배수지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관로설치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 금정산성 주변에 산성마을 배수지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관로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변경허가신청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일원
- (3) 신청내용<산성마을 배수지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 및 관로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산68-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 사업내용

| 구 분  | 기허가사항('12.7.10)      | 변 경                | 비고     |
|------|----------------------|--------------------|--------|
| 면적   | 1,573.9㎡(1구역 1,030㎡) | 3,206㎡(1구역 1,669㎡) | 증1,633 |
| 절토   | 920㎡                 | 1,137㎡             | 증217   |
| 성토   | 1,210㎡               | 2,552㎡             | 증1,342 |
| 진입도로 | B=4.0m, L=49.1m      | B=4.0m, L=47.6m    |        |
| 송수관로 | D200mm, L397.2m      | 좌동                 |        |
| 배수관로 | D200mm, L395.8m      | 좌동                 |        |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32. 강화 홍릉 주변 청소년야영장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224호 「강화 홍릉」 주변 청소년 야영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 홍릉 주변에 청소년 야영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지난 1차 사적분과('12.1.11)에서 가결되어 허가한 사항으로 동수를 축소하고 야영장 부지를 확대하여 변경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홍릉(사적 제224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80번지
- (3) 신청내용<청소년 야영장 부지조성>
  - 위치 : 인천 강화군 국화리 740-3(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
  - 사업내용

| 구분     | 허가사항('12.01.11)                             | 변경신청('12.9.12)                                  | 비고                    |
|--------|---------------------------------------------|-------------------------------------------------|-----------------------|
| 야영장 부지 | 4,800m <sup>2</sup>                         | 6,814m <sup>2</sup>                             | 2,014m <sup>2</sup> 증 |
| 1동     | H=4.8m, 건축면적:50.0m <sup>2</sup><br>(취사/화장실) | H=4.8m, 2층, 건축면적:99.9m <sup>2</sup><br>(취사/화장실) |                       |
| 2동     | H=4.8m, 건축면적:50.0m <sup>2</sup><br>(취사/화장실) |                                                 | 삭제                    |
| 진입로    |                                             | 1,354m <sup>2</sup> (잡석포설, 나무식재)                | 신설                    |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위 신청지는 사적 제224호 '고려고종홍릉'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보존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450m 이상 이격된 곳임

- 2012년 1월 기 허가를 받은 곳으로 허가 시 보다 건물 동 과 면적은 줄어드나, 진입로가 새로 추가되는 건임
- 진입로 조성은 포장공사가 아닌 잡석포설이고 절토는 없고 성토도 미비하므로 사업을 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3. 홍성 홍주읍성 내 남문 및 성벽 복원

#### 가. 제안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내 남문 및 성벽을 복원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성군이 홍성고도역사 문화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홍주읍성의 남문 및 남문 주변 성벽을 복원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번지 등
- (3) 신청내용<홍주읍성 남문 및 성벽 복원>
  - 위치 : 충남 홍성군 오관리 411-7번지 등(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남문복원 : 면적 39.06㎡, 남문 진입로 계단(L=2.4m, H=4.41m) 및 성문 진입로 계단(L=2.0m, H=3.96m(2개소))
    - 성벽복원 : 길이 55m, 여담 8타 설치
    - 기타공사 : 아스콘 해체 후 흙고화 포장(1,104.89㎡) 등
    - 사업비 : 15억원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 34. 연천 경순왕릉 내 고사목 제거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내 고사목 제거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순왕릉 내 고사목 제거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0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능역 정비 후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여 이를 제거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경순왕릉(사적 제244호)
  - 소재지 : 경기 연천군 장남면 고량포리 산18-2
- (3) 신청내용<고사목 제거>
  - 위치 : 경기 연천군 장남면 고량포리 산18-2, -3(문화재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고사목(소나무) 12주 제거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5.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공유수면매립(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부산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에 공유수면매립을 위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 당초 2006.11.22 조건부 허가된 사항으로(각종 시설물 설치는 공유수면 매립 후 별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매립공사 완료 및 부지 분양 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민원발생을 우려 현상변경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동삼동 패총(사적 제266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 (3) 신청내용<공유수면매립(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880-3번지 지선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0m~380m 이격)
  - 사업내용
    - 매립면적 : 46,000m<sup>2</sup>
    - 시설물 설치계획

| 구역         | 당초 ('06.11.23) | 변경('12.9.12)        | 비고 (허용기준)   |
|------------|----------------|---------------------|-------------|
| 100m 내     | 최고8층이하         | 최고5층이하(17m)         | 최고3층이하(11m) |
| 100~500m 내 |                | 최고12층~19층 (38m~60m) | 최고8층이하(26m) |



## 라. 추진경과

- 2004.07.22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시설물 높이 10층 이하)
- 2004.08.24 : 심의결과 부결(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우려 등의 사유)
- 2004.09.22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 신청(시설물 높이 8층 이하)
- 2006.11.22 : 문화재 현상변경조건부허가
  - ※ 각종 시설물 설치는 공유수면 매립 완료 후 별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2010.01.27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부산광역시)
- 2010.05.04 : 실시계획 승인(부산광역시)
- 2010.12.31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문화재청)
- 2012.05.21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36.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부잔교 설치

### 가. 제안사항

부산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 부잔교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 동삼동 패총 주변에 다목적 어장관리선의 접안시설인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동삼동 패총(사적 제266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 (3) 신청내용<부잔교 설치>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764-4번지 지선(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90m 이격)
  - 사업내용
    - 규모 : 5m x 7m
    - 공유수면 점사용 : A=150m<sup>2</sup>
    - 사업비 : 10백만원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7.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식생복원사업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문화재구역 내 식생복원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식생복원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소재지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일원
- (3) 신청내용<식생복원사업>
  - 위치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문화재구역 내)
  - 내용
    - 규모 : 17,886m<sup>2</sup>
    - 표토제거, 원지반 고르기, 잔토처리
    - 외래 수종 제거 : 스트로브잣나무 22주
    - 소나무 외 1종 47주, 개복숭아 외 24종 530주, 보리수 외 5종 2,502주 식재

### 라. 참고사항

- (1) 연천군 자문회의(2012.8.14)
  - ○○○(○○대학교 고고학과, 구석기시대 전공)
    - 장탄리 한탄강변 토탄층 노출 단면에서 채취한 시료의 화분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식생의 구성은 소나무, 잣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 등 중부 내륙 지역의 전형적인 식생복합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무암 내 탄화목(토층전시관 전시품 /“나무를 삼킨 용암”)의 수종인 수양벚나무는 반드시 식재계획에 포함하여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것

- 현재 사업 대상지의 서쪽 높은 지역(예전 전곡리토성으로 추정되던 곳)은 구석기 문화층이 부존하는 지역으로 수목 식재로 인해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반면 그 아래 저지대는 이미 60년대 이후 벽돌 제조를 위한 토사 채취로 원지형이 완전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식생복원 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 ○ (문화재위원, 조경학 및 조경사 전공)

- 역사 식재는 주변 지역이 갈대 및 버드나무 군락지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복원 시 자연스럽게 역사 군락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사업 대상 부지는 유적지와 연결하여 향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오토캠핑장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수목의 식재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역사 식재를 제외하고 대신 수종이 큰 상수리 나무 등을 식재하도록 하고 식재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되 전반적으로 현상태와 어울리는 식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재 지형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외래수종은 제거하여 원래 환경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하도록 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종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식재

### 38. 남원 만인의총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남원 만인의총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만인의총(사적 제272호)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향교동 628 외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778(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
  - 사업내용

| 구 분   | A동(6세대)          | B동(4세대)          |
|-------|------------------|------------------|
| 용 도   | 다세대주택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
| 건축면적  | 388.67㎡          | 97.63㎡           |
| 연 면 적 | 646.80㎡          | 176.64㎡          |
| 높 이   | 10.85m(지상 2층+옥탑) | 10.35m(지상 2층+옥탑) |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외관은 문화재와 어울리게 조정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시행

### 39. 남원 실상사 내 템플스테이 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내 템플스테이 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남원 실상사 내 템플스테이 시설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8차(2012.8.8) 심의 시 부결되어 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실상사(사적 제309호)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3 외
- (3) 신청내용<템플스테이 시설 신축>
  - 위치 : 실상사 내(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발굴조사 : 템플스테이 시설 신축 위치 4,192.42㎡/(재)불교문화재연구소
    - 템플스테이 시설 신축

| 구분 | 8차 심의(부결)                                | 금차 심의                   | 증감        |
|----|------------------------------------------|-------------------------|-----------|
| 용도 | 강의동, 숙소동, 부속동                            | 강당동, 숙소동                |           |
| 구조 | 목구조+금속지붕                                 | 전통한옥구조                  |           |
| 면적 | 강의동 126.93㎡<br>숙소동 198.80㎡<br>부속동 69.42㎡ | 강당동 84.7㎡<br>숙소동 186.0㎡ | 124.45㎡ 감 |
| 높이 | 4.3m(지상1층)                               | 5.9m(지상1층)              | 1.6m 증    |

## 라. 의결사항

### ○ 조건부가결

- 건물의 규모, 높이 등 세부설계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40. 경주 남산 일원 내외 도로터널 등 개설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외에서 도로 터널 개설과 도로선형의 부분 개량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과 인접 1구역에 도로터널 개설과 도로선형 부분개량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4개동 일원
- (3) 신청내용<서라벌로 터널개설 및 도로선형 부분개량>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605-2 외 9필지(문화재구역 및 1구역)
  - 사업내용
    - 도당산 생태터널 : L=80m, B=30m
    - 서라벌대로 선형개량 : L=600m, B=30m
      - 토 공 : 절토 45,200m<sup>3</sup>, 성토 46,400m<sup>3</sup>
      - 배수공 : 우수관 142m, 맹암거 306m, 측구 1,493m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12,604m<sup>2</sup>, 덧씌우기 포장 4,469m<sup>2</sup>
      - 터널공 : 터널 80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경주남산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현 남산 북측의 도당산 도로 절개 부분에 터널(폭:30m, 길이 80m)을 구성하고 복토하여 지맥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된 도로(길이:600m)의 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터널로 남산의 지맥을 연결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선형 개선을 위하여 남산 지정구역 내로 도로가 증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41.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일원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1구역에서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을 목적으로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경주 나정(사적 제245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등 4개동 일원 외
- (3) 신청내용<남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721-2번지 외(문화재구역과 인접/1·2구역)
  - 사업내용 : L = 260m, B = 8.0m(기존 폭 4.0m 내외)
    - 도로구조 : 아스콘 확·포장
    - 도로규모 : B = 8.0m (기존 : 4.0m 내외)
    - 토 공 : 흙깎기 V=437.0m<sup>3</sup>, 흙쌓기 V=530.0m<sup>3</sup>
    - 배수공 : 옹벽 L=61.0m, L형측구 L=172.0m
    - 포장공 : B=8.0m L=254.0m (A=2,000.0m<sup>2</sup>)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건은 경주나정과 경주 남산에서 20여m이격된 곳에 마을 진입로를 폭 8.0m로 확장하여 260여m를 재포장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도로 확장공사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에 유적이 분포하므로 시굴조사가 필요하며, 확장에 따른 측면의 옹벽시설 설치계획은

자연토사 사면으로 대체하고 지피식물로 마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옹벽은 토사사면으로 대체하여 시공

## 42.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나주읍성 서성문 주변 도로 개설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 외
- (3) 신청내용<도로 개설>
  - 위치 : 전남 나주시 서내동 111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m 이격)
  - 사업내용 : 서성문~나주천간 도시계획도로 L=279.2m, B=8m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재검토

### 43. 익산 입점리 고분군 주변 숲가꾸기 사업

#### 가. 제안사항

전북 익산시 소재 사적 제347호 「익산 입점리 고분군」 주변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익산 입점리 고분군 주변 숲가꾸기 사업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입점리 고분군(사적 제347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1 외
- (3) 신청내용<숲가꾸기 사업>
  -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64, 산164-4(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 이격)
  - 사업내용
    - 산림현황

| 지번     | 임반  | 소반  | 면적(ha) | 수종      | 총축적(m <sup>3</sup> ) |
|--------|-----|-----|--------|---------|----------------------|
| 산164   | 1-0 | 1-0 | 1.2548 | 활잡, 리기다 | 154.92               |
|        |     | 2-0 | 1.4269 | 활잡 외    | 180.29               |
| 산164-4 | 2-0 | 1-0 | 0.8062 | 활잡 외    | 126.04               |
|        |     | 2-0 | 0.5097 | 활잡 외    | 60.79                |

#### - 경영계획

| 지번     | 임반  | 소반  | 입목지 면적 | 벌채(2012) | 조림(2013)   | 숲가꾸기(2013~18)                 |
|--------|-----|-----|--------|----------|------------|-------------------------------|
| 산164   | 1-0 | 1-0 | 1.2ha  | 모두베기     | 경제수 1,800본 | 2013~15년 풀베기<br>2018년 어린나무 심기 |
| 산164-4 | 2-0 | 1-0 | 0.8ha  | 모두베기     | 경제수 1,200본 | 2013~15년 풀베기<br>2018년 어린나무 심기 |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7.18/산림경영기술자 ○○○)

#### ○ 산164(1-0-1-0)

- 활엽수의 대부분은 밤나무로 이루어져 있음.
- 고사목이 많고, 특히 벌기령이 지난 리기다의 경우 더 많이 존재함.
- 활엽수의 수형이 불량하고, 리기다의 벌기령이 지나 고사하고 있는 상황.
- 벌채 후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산164(1-0-2-0)

- 경급 20cm 이상의 고사목이 많음.

#### ○ 산164-4(2-0-1-0)

- 리기다 고사목이 많음
- 형질불량목이 많고, 마찰목 및 덩굴류의 피해가 심함.
- 리기다소나무의 벌기령이 지나고, 기존 활엽수의 형질이 불량하여 벌채 후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산164-4(2-0-2-0)

- 리기다 고사목이 많고, 덩굴류에 의한 피해목이 있음.

## 마. 의결사항

###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44. 파주 오두산성 주변 트레이닝센터 본관동 증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주변 트레이닝센터 본관동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오두산성 주변 축구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 본관동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오두산성(사적 제351호)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번지 외
- (3) 신청내용<트레이닝센터 본관동 증축>
  - 위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8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2m 이격)
  -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3구역(평지붕 14m, 경사지붕 16m)
  - 내용

| 구분     | 기존면적       | 증축면적    | 계         | 비고        |
|--------|------------|---------|-----------|-----------|
| 대지면적   | 113,753.2㎡ |         |           |           |
| 건축면적   | 4,070.08㎡  |         | 4,070.08㎡ |           |
| 연면적    | 8,797.35㎡  | 642.10㎡ | 9,439.45㎡ | 642.10㎡ 증 |
| 지상층 면적 | 7,488.06㎡  | 642.10㎡ | 8,130.16㎡ | 642.10㎡ 증 |
| 건폐율    | 3.58%      | -       | 3.58%     |           |
| 용적율    | 6.58%      | 0.56%   | 7.15%     |           |
| 최고높이   | 16.40m     | 16.85m  |           | 0.45m 증   |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45. 서울 탑골공원 문화재구역 내 담장 및 대문 설치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문화재구역 내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탑골공원 외곽담장 외부의 동편 사유지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흰스형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5.9) 회의시 ‘종로구의 대안 마련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고, 제8차(8.8) 회의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부의하는 사항임
- ※ 2010년 본 문화재위원회(‘10.8.11)에서 담장설치 지역의 점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토록 심의하여 이를 종로구에 통보함
- ※ 신청지역은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며 공원지역이므로 종로구청은 2010.8.2. 점용허가불허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2심)에서 2012.2.8. 패소(\* 종로구는 대법원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 포기)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 등
- (3) 신청내용<담장 및 대문 설치>
  -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9(문화재 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담장(흰스형) 42.5m(높이 1.8m)
    - 대문(흰스형 출입문) 2개소(폭 2.1m, 높이 1.8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8/문화재위원 ○○○, ○○○)

- 현재 도로 및 통행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유지에 담장 및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보행인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과 우체국, 자치센터, 경찰서를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 기존 공원담장의 외곽으로 현상변경허가 신청된 담장과 출입문의 높이 (1.8m)는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 공원담장 보다 낮게(약 1.5m) 설치하고 기초부(길이 0.4m, 약 12개소)의 터파기 시에는 지하매장 유구 잔존 유무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따라서, 현상변경허가 전에 관리단체로 하여금 담장 및 출입문 설치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토지매입의 구체적인 방안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제출받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탐골공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탐골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 (2) 종로구 보존대책 등 의견('12.08.01)

- 담장 및 대문 설치에 따른 통행제한 시 문제점 및 대책
  - 현상변경 허가 신청지역은 토지이용 현황상 도로와 일부지역이 탐골공원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및 우체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통행로로 담장 및 대문 설치가 될 경우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차량통행 제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관리 문제점 등 공익적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됨.
  - 동 주민센터 및 주변건물에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어르신, 장애인 등) 등이 대부분 동 주민센터의 북동, 북서쪽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센터 내방에 큰 불편이 예상됨.
  - 또한, 우체국 화물수송 차량과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우편행정과 동 행정에 많은 문제점 발생.
  - 이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현상변경 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심의예정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 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심의 필요함.
  - 종로2가 39번지는 공원이자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으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토지보상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에도 공원전체

면적의 62%가 문화재청 소유 국유지임.

- 우리구 또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보상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와 대화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안(소송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 할 계획임.
-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로2가 39번지 탑골공원 일부 통행로는 관련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과거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시장·군수 등이 도로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관련부서 협의 및 법률자문 시 다수 의견임.
- 담장 및 대문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유동인구의 통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 1974년 이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던 종로2가 39번지 지역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도로폭이 반으로 축소되고, 우회도로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 시민 및 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됨.
- 토지보상비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방안
  - 탑골공원 문화재지정구역 내 점용(담장 및 대문설치), 사유지 내 담장설치 (1.3㎡) 지역에 대하여는 소송결과(원고:승)에 의거 토지보상과 결부될 수 밖에 없음. 토지보상비 확보에 대하여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문화재청의 문화재지역 토지보상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3) 현지조사 후 종로구 추가의견('12.09.04)

- 우리구 종로2가 39번지 일대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문화재구역 내 담장철거 및 명도이전 소송 및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2012.08.28 현지조사 및 협의에 대한 우리구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탑골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역사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크므로 많은 시민과 언론이 주의주시하고 있어 탑골공원의 담장 철거, 공원주변 담장 및 대문 설치로 통행이 불가 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구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 당사자와 토지보상을 통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됨
- 2012.5.29 우리구에서 귀청에 신청한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3년도 국고보조금 요청 금액이 100% 확보가 어렵다면 서울시와 협력(매칭)하여 2014년, 2015년 등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민원해결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4) 토지소유자 의견서('12.07.16)

- 종로 2가 39번지의 담장 점용허가 신청은 위의 1~8번(행정소송)까지에서와 같이 약 2년 이상이 걸렸음
- 최종 심의기관이 문화재청의 의견은 보류 상태에서 종로구청에 담장 설치 후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라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종로구청은 본 토지주에게 토지보상금 약 50억원(토지 250m<sup>2</sup>)을 현재는 종로구청 재정상태가 어려우니 4-5년에 걸쳐서 분할하는 지불조건을 검토중에 있다고 제안하였음
- 본 토지주는 담장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250m<sup>2</sup>를 빼고 나머지 622.7m<sup>2</sup>의 토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함
- 서울시의 용적률 20%의 인센티브를 받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보면 공공시설 부지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그러하면 본 관광호텔 부지는 용적률 803%까지 가능함
- 구청이나 시청은 본 토지가 지구단위 구역으로 제46조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곳은 문화재지구 구역으로 문화재청의 높이제한을 받은 지역으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득하여야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음
- 그리하여 본토지주는 종로구청의 재정 어려움과 본 토지에 담장건축으로 인한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공공시설 부지(250m<sup>2</sup>) 기부채납으로 하여 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함

#### 마. 의결사항

- 보류
  - 탑골공원 담장 밖의 도로(사유지)가 통행이 제한될 경우 주민들이 파출소, 우체국, 자치센터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민원우려가 많으므로 종로구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후 재검토

## 46. 서울 탑골공원 내 개천절민족행사 개최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내에서 개천절민족 공동행사를 개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에서 서울 탑골공원에서 개천절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윤○○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 등
- (3) 신청내용<개천절민족공동행사 개최>
  - 행사명 : 개천절민족공동행사
  - 행사기간 : 2012.10.3, 11:00~18:00
  - 행사위치 : 탑골공원 내(독립선언서 기념비 앞)
  - 행사내용 : 천제 선의식, 기념식, 문화공연(15:00~17:30), 시민민속놀이 경연마당, 한민족역사 전시회 등
  - 행사 시설물 설치 : 무대 약 40평(14.5m×9.1m), 의자 500개, 몽골텐트 5동 등
  - 주최 :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 주관 : 대중교, 천도교,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0개 단체
  - 안전대책 : 질서유지인 30여명으로 행사 안전 진행, 종로소방서 등과 협의 하여 소방차 대기 및 구급차(의사 및 간호사) 대기 예정

### 라. 검토의견

- 동 행사시 설치되는 임시시설물은 30평 정도의 무대와 간이의자 500개 등을 하루 정도 설치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함으로 인한 화재 등 문화재 훼손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사주체가 문화재관리단체인 종로구에 문화재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 47. 남양주 순강원 주변 군 독신자숙소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주변 군 독신자숙소 신축을 위하여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순강원 주변 군 독신자숙소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순강원(사적 제356호)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번지
- (3) 신청내용<군 독신자숙소 신축>
  - 위치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
  - 사업내용
    - 규모 : 지상2층, 1동(24실)
    - 부지면적 26,216㎡, 건물높이 : 6.1m, 건축/연면적 256.35㎡/512.7㎡
    - ※ 기존숙소 현황(1985년도 준공)
      - 1층, 적벽돌, 슬라브기와, 전용면적57.6㎡, 공급면적7.2m×16m=115.2㎡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된 3062부대 내에 노후된 연립관사(115.2㎡)를 철거한 후 2층, 24실 규모의 독신자 숙소를 신축하고자 신청하였으며,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보존구역)을 초과하므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받고자 신청하였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48. 구리 명빈묘 주변 태극기 게양대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364호 「구리 명빈묘」 주변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명빈묘 주변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명빈묘(사적 제364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경기 구리시 아천동 산14번지
- (3) 신청내용<태극기 게양대 설치>
  - 위치 : 경기 구리시 아천동 산9-7(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4m 이격)
  - 사업내용
    - 높이 75m(스텐), 직경 1,300mm~400mm
    - 공사용가도 : 길이 171m, 폭 4m
    - 유지관리용도로 : 길이 332m, 폭 1.5m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사업의 필요성
  - 조국분단의 현실속에서 지난 북한의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폭격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대두됨
  - 국가의 상징이며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태극기를 통해 국가안보위기 및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0년 제65주년 광복절을 맞아 구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극기의 도시를 선언하고 국기선양사



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고구려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아차산 자락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태극기의 존엄성을 높이고, 구리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태극기 사랑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명빈묘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49. 충주 장미산성 내 시굴조사

###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사적 제400호 「충주 장미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중원지역 고대문화 학술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장미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성격 규명을 위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장미산성(사적 제400호)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7-1번지 등
- (3) 신청내용<시굴조사>
  - 과제명 : 중원지역 고대문화 학술조사연구
  - 조사목적 : 충주 장미산성 건물지 및 일부 성벽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하여 향후 조사의 타당성 검토 및 성격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대상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7-1번지(문화재구역 내)
    - 현황 : 조사 대상지역은 장미산성의 남벽 붕괴구간을 포함한 건물지로 추정되는 완만한 경사지로 남벽의 축조방식 및 건물지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곳임
  - 조사경위
    - 1992년 : 충북대학교 박물관 지표조사 결과 산성 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을 통하여 백제 한성기의 산성일 가능성 제기
    - 2001~2002년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장미산성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후 시굴조사 실시
    - 2003~2004년 : (재)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북서쪽 성벽 내측의 토루와

배수구, 수리시설인 배수구와 석축 기반부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

- 2008년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장미산성의 현황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측량
- 2012년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장미산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남쪽 성벽 내측의 건물지에 대한 시굴  
조사를 추진

○ 조사단

- 단 장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 조 사 원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및 연구원 4명
- 자문위원 : 관계 전문가 5명 내외

○ 조사방법

- 건물지 : 건물지 초석 및 축대시설 확인을 위하여 길이 10m, 폭 2m의  
시굴갱을 등고선과 직교하게 설치
- 성 벽 : 성벽 일부는 붕괴면 정리 후 잔존 성벽 확인 및 외측면 초축  
시설확인을 위한 일부 테스트 피트 설치
- 유적 보존을 위해 시굴 완료 후 원상태로 복원

○ 조사기간 : 2012.9~11월(실 작업일수 50일)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50. 나주 복암리 고분군 주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부설

###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404호 「나주 복암리 고분군」 주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부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나주 복암리 고분군 주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를 부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 복암리 고분군(사적 제404호)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3-17번지 외
- (3) 신청내용<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부설>
  - 위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905-7(문화재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복암리 고분 옆 도로를 굴착하여 광역상수도 송수관로(Ø300) 부설
    - 굴착 : 높이 1.5m, 너비 1.4m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재검토

## 51. 하남 이성산성 주변 다세대 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주변에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하남 이성산성 주변에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민○○
- (2) 대상문화재명 : 하남 이성산성(사적 제422호)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산36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다세대 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03-21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8m 이격)
  - 내용
    - 부지면적 : 761m<sup>2</sup>
    - 건축면적 : 207.41m<sup>2</sup>
    - 연면적 : 504.69m<sup>2</sup>
    - 건축규모 : 1동
    - 최고높이 : 11.68m(3층)
    - ※ 절토량 : 459.7m<sup>3</sup>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52. 강화외성 주변 송전철탑 설치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주변 송전철탑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외성 주변 송전철탑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3) 신청내용<송전철탑 신축>

- 위치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4-11, 1257, 1258, 1160(문화재구역과 인접)

-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

- 사업내용 : 송전철탑 3기(154kV 2회선)

- 철탑 No.4 : 부지면적 829㎡, 탑정높이 120m(강화외성과 10m 이격)

- 철탑 No.5 : 부지면적 248㎡, 탑정높이 49m(강화외성과 30m 이격)

- 철탑 No.6 : 부지면적 188㎡, 탑정높이 40m(강화외성과 320m 이격)

- \* 옴하 횡단 상공 80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53. 강화외성 주변 가로수 식재

###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주변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외성 주변 가로수 식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 (3) 신청내용<가로수 식재>
  - 위치 : 인천 강화군 불은면 오두돈대~광성보(문화재구역과 인접)
    -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
  - 사업내용
    - 사업량 2.4km, 벚나무(H 3m, B 6m) 400주 식재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가로수 식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54. 아차산 일대 보루군 내외 도로구조 개선사업

### 가. 제안사항

서울시 광진구 소재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내외에서 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업지역은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제1,2보루) 문화재구역 내외에서 도로구조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지역 도로는 인근 초등학교 및 등산객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로 급경사 및 선형불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최근 2년간 4건의 사고 발생)이 상존하여 도로경사 및 선형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아차산 일대 보루군(사적 제455호)
  - 소재지 : 서울 광진구 구의2동 산4-13 등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2동 4-19번지 일대(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도로선형 개선 : 절토 3m, 연장 45m, 옹벽 및 자연석 쌓기 등
    - 도로 주변 노후 목재데크 정비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30/문화재전문위원 ○ ○ ○)
  - 본 건은 아차산 보루군의 문화재구역 내외에 도로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 데크 보도를 수리하고 문화재구역을 3m 절개하여 4m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데크보도는 현황대로 수리하고, 절개하려고 하는 문화재구역의 반대편 보도에 충분한 여유폭이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문화



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개선의 목적을 이룰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55. 경주 대릉원 내 테마공원 조성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내에서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대릉원 문화재구역 내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상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사적 제512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외 일원
- (3) 신청내용<테마공원 조성>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외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종각광장 : 3,110m<sup>2</sup>
      - 종각 : 69.56m<sup>2</sup> (지상1층, 모입지붕형식, 현 성덕대왕신종 종각 규모)
      - 종각광장 포장 : 잔디블럭 3,040m<sup>2</sup>
    - 친수광장 : 617m<sup>2</sup>
      - 실개천 39m<sup>2</sup>, 친수공간 175m<sup>2</sup>, 점토벽돌포장 99m<sup>2</sup>, 목재데크포장 30m<sup>2</sup>
      - 황토경화포장 24m<sup>2</sup>, 잔디블럭포장 50m<sup>2</sup>, 에코블럭포장 200m<sup>2</sup>
    - 만남의 광장 : 3,167m<sup>2</sup>
      - 포토존역 15m<sup>2</sup>, 잔디블럭포장 600m<sup>2</sup>, 황토경화포장 384m<sup>2</sup>, 점토벽돌392m<sup>2</sup>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대릉원 일원 지정구역 내 노동리 고분군 위치에 종각과

실개천 등을 구성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주 대릉원 일원의 역사성과 연관성이 없고 인위적인 시설물로서 경주 대릉원 일원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56. 제주목 관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목 관아 객사터가 2012.3월 추가 지정됨에 따라 변경된 현황에 맞게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983-1 외
- (3) 신청내용<제주목 관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 구분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1구역  | ○ 보존구역                                                                                                                                                                                                                                                                          |               |
| 2구역  | ○ 최고높이 8m 이하                                                                                                                                                                                                                                                                    | ○ 최고높이 11m 이하 |
| 3구역  | ○ 최고높이 11m 이하                                                                                                                                                                                                                                                                   | ○ 최고높이 14m 이하 |
| 4구역  | ○ 최고높이 14m 이하                                                                                                                                                                                                                                                                   | ○ 최고높이 17m 이하 |
| 5구역  | ○ 최고높이 17m 이하                                                                                                                                                                                                                                                                   | ○ 최고높이 20m 이하 |
| 6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br>-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공통사항 |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br>○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br>○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br>○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               |

|  |                                                                                                              |
|--|--------------------------------------------------------------------------------------------------------------|
|  |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br>○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br>○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라. 검토의견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상 작성범위는 200m임.
- 제주목 관아는 도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가지정된 객사터 주변에는 1~11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음.
- 추가지정구역 이외의 지역은 기존과 같이 규제하고, 객사터 주변은 재산권 보호 및 문화재 역사경관 보존 두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3층 규모 이하로 규제하고 있던 객사터 인접 대지는 2~3층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도로 건너편 대지는 3~4층 규모로 규제한다면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구분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 비고 |
|------|--------------------------------------------------------------------------------------------------------------------------------------------------------------------------------------------------------------------------------------------------------------------------------------------------------------------------------------------------------------------------------------------------------------------------------|------------------------------|----|
|      | 평지붕                                                                                                                                                                                                                                                                                                                                                                                                                            | 경사지붕(10:3 이상)                |    |
| 1구역  | ○ 보존구역                                                                                                                                                                                                                                                                                                                                                                                                                         |                              |    |
| 2구역  |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    |
| 3구역  |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 최고높이 14m(3층) 이하            |    |
| B구역  | ○ 최고높이 8m(2층) 또는 11m(3층) 이하                                                                                                                                                                                                                                                                                                                                                                                                    | ○ 최고높이 11m(2층) 또는 14m(3층) 이하 |    |
| A구역  | ○ 최고높이 11m(3층) 또는 14m(4층) 이하                                                                                                                                                                                                                                                                                                                                                                                                   | ○ 최고높이 14m(3층) 또는 17m(4층) 이하 |    |
| 6구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사항 |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br>○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br>○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br>○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br>○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br>○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br>○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    |

## 마. 참고사항

### ○ 주민의견

- 보존지역 확대라는 미명하에 구도심 개발을 철저히 저해하려는 정책에는 절대 동의 못함(강○○)
- 이제와서 객사터를 문화재로 지정, 현상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으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됨(고○○)
- 기존 건축물(11층) 고도를 유지하여 주십시오(김○○)

## 바. 의결사항

###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57. 여주 고달사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여주 고달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연번 | 대상문화재            | 신청인 | 신청내용                                                                                                                 | 비고 |
|----|------------------|-----|----------------------------------------------------------------------------------------------------------------------|----|
| 1  |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 김○○ | <b>&lt;단독주택 신축&gt;</b><br>○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142<br>○ 내용<br>- 부지면적 724㎡, 건축면적 89.42㎡, 연면적 99.42㎡, 건물높이 5.55m(1층) |    |

###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 연번 | 대상문화재            | 신청내용          |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 참고사항 |
|----|------------------|---------------|---------------------------------------------------------------------------------------|------|
| 1  |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 단독주택 신축 (김○○) | ○ 본 신청 건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연결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58.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개선과 미관 증진을 위하여 현대화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서 '12.07.04 사적분과 심의 부결 후, '12.08.08 심의에서 '동구릉 각 능 혼유석에서 조망하는 시물레이션 보완 후 재검토' 하기로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 위치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36-90(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m~500m이격 /5구역(29m, 9층 이하))
  - 사업내용
    - 사업부지 23,134㎡, 건축/연면적 5,258㎡/26,230㎡
    - 총 규모 23층, 92m 중 현상변경허가대상 지상 6층, 26m, 1개동(부분), 판매시설

| 구분   | 1차('12.07.04) | 2차('12.08.08) | 3차(금회) | 비고                                     |
|------|---------------|---------------|--------|----------------------------------------|
| 사업부지 | 23,134㎡       | 23,134㎡       | 좌동     | ※ 전체사업 중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의 사업은 6층 26m, 1개동임 |
| 규모   | 지상 25층, 100m  | 지상 23층, 92m   |        |                                        |
| 동수   | 1개동           | 1개동           |        |                                        |
| 연면적  | 223,600㎡      | 212,700㎡      |        |                                        |
| 주용도  | 도매시장(판매시설)    | 도매시장(판매시설)    |        |                                        |
| 건축면적 | 5,258㎡        | 5,258㎡        |        |                                        |



##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 의견

- 2012.8.8 심의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한 조치 보완후 재신청함
- 사업부지 일부가 이격거리 500m 이내에 속함. 건물 전체 1동, 지상23층, 최고높이 92m(500m이내 부분 6층 26m)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9-059

###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10필지 1,293m<sup>2</sup>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 지정면적 : 650필지 287,013m<sup>2</sup>
  - 추가지정 신청면적 : 10필지 1,293m<sup>2</sup>
- (4) 신청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2.07.16, '12.07.27)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지하에 백제문화층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 따라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번<br>면적(m <sup>2</sup> ) | 지정<br>면적(m <sup>2</sup> ) | 소 유 자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1   | 서울<br>송파구<br>풍납동 | 222-142 | 대  | 132                       | 132                       |       |     |
| 2   |                  | 141-43  | 대  | 129                       | 129                       |       |     |
| 3   |                  | 139-14  | 대  | 179                       | 179                       |       |     |
| 4   |                  | 230-9   | 대  | 119                       | 119                       |       |     |
| 5   |                  | 82-9    | 대  | 156                       | 156                       |       |     |
| 6   |                  | 132-16  | 대  | 86                        | 86                        |       |     |
| 7   |                  | 280-10  | 대  | 123                       | 123                       |       |     |
| 8   |                  | 252-14  | 대  | 151                       | 151                       |       |     |
| 9   |                  | 80-3    | 대  | 144                       | 144                       |       |     |
| 10  |                  | 160-2   | 대  | 74                        | 74                        |       |     |
| 합 계 |                  |         |    | 1,293                     | 1,293                     |       |     |

## 2. 서울 탑골공원 사유지 점유 담장 관련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의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탑골공원 담장부분에 대한 조치방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탑골공원의 담장선에서 돌출된 담장부분(1.3m<sup>2</sup>)이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는 종로구와의 소송을 하는 등 ‘담장철거 및 명도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조치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담장철거 및 명도이전’ 소송에서 종로구는 1심(‘12.2.23)과 2심(‘12.7.20) 패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 중
- 판결결과 : 1.3m<sup>2</sup>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라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 등
- (3) 신청내용<사유지 점유 탑골공원 담장 조치방안>
  - 점유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9(문화재 지정구역)
  - 점유면적 : 1.3m<sup>2</sup>
  - 설치시기 : 1983.10.15./종로구청(\*1991.10.25. 사적 지정)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8.28/문화재위원 ○○○, ○○○)
  -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원담장은 우선적으로 문화재 관리단체인 종로구청 주관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구역과 담장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
  -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담장 부분은 담장선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철거되더라도 담장이 기능에 문제가 없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다만, 관리단체가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현재의 담장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설치·철거하여도 무방할 것임

## (2) 소송판결 주요 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탑골공원의 외곽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담장도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서울 탑골공원의 문화재구역으로 그 일부를 수리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 이 사건 담장의 철거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제한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게 된다거나, 위와 같은 제한이 원고가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법상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1983년 담장이 설치된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나 현재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는 사정을 알고 매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함
-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담장이 있는 토지는 그 절대적인 면적은 작으나, 공로와 통하는 폭이 좁은 입구 쪽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공시자가가  $m^2$ 당 9,5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 마. 의결사항

- 보류
  - 종로구청에서 경계측량을 통한 토지매입 협의 후 재검토

### 3.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의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대문구에서 2011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문화유산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 사업명 :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 2011년 예산 : 2,000,000천원(국비 1,000,000천원, 지방비 1,000,000천원)
- 2011년 확정사업내용 : 전시관 건축, 조경공사 및 주변정비
- 사업지침
  - 선농단 내 향나무(천연기념물) 보존을 고려,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한다.
  - 현재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하부에 선농단·선농제 관련 유물의 전시·수장고,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공간을 조성한다.
  - 역사적 고증자료를 토대로 복원·정비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주변 지형과 경관이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선농단(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천기 제240호)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74-1번지
- (3) 신청내용<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74-1번지
    - 대상지 면적 : 3,933m<sup>2</sup>
    - 사업내용
      - 선농문화관 조성 : 연면적 1,345m<sup>2</sup>(주차장면적 제외)

- .. 지하1층(535.5m<sup>2</sup>) : 다목적홀, 선농 역사자료관, 사무실 등
- .. 지하2층(809.5m<sup>2</sup>) : 전시실, 기계/전기실, 부설주차장 등
- 조경식재계획
  - .. 기존 수목 제거 등 정비 : 은행나무, 개나리, 무궁화, 측백나무, 플라타너스 등
  - .. 수목식재 : 소나무, 옥매화, 앵도나무, 조릿대, 회양목, 철쭉 등
- 시설물 및 포장 계획 : 박석포장, 석축옹벽, 목재옹벽, 장대석스텐드, 어린이체험시설, 잔디포장, 청량대(표석), 문인석 등
- 선농단 정비 : 기존 화강암장대석 해체, 마사토 다짐 등
- 사업기간 : 2009.8~2013.12.

## 라. 의결사항

### ○ 보류

- 소위원회(건축, 조경, 역사, 토목)을 구성하여 검토 후 재검토

## 4. “충무공탄신일” 명칭 변경 검토

### 가. 제안사항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00호)에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무공 탄신일은 조선시대 왜군을 무리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나, 명칭이 「충무공 탄신일」로 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충무공 시호를 받은 분이 여러 명이 있음을 감안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로 명칭변경을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신청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지역 이동신문고 행사 시 건의
- (3) 신청내용 : 기념일 명칭 변경
  - 기존 : 충무공 탄신일 => 변경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 (4) 참고사항
  - 충무공 시호를 받은 사람(9명)
    01. 조영무( ~1414) : 조선조 개국공신
    02. 남 이(1441~1468) : 적개공신(이시애의 난 평정)
    03. 이 준(1441~1479) : 구성군. 익대공신(남이의 옥사)
    04. 이순신(1545~1598) : 선무공신(임진왜란)
    05. 김시민(1554~1592) : 선무공신(임진왜란)
    06. 이수일(1554~1632) : 진무공신(이괄의 난)
    07. 정충신(1576~1636) : 진무공신(이괄의 난)
    08. 구인후(1578~1658) : 정사공신(인조반정)
    09. 김응하(1580~1619) : 심하전역(광해군조 명 원군 참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5. 홍성 의사총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검토

### 가. 제안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사적 제431호 「홍성 의사총」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요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성군에서 홍성 의사총(洪城 義士塚)의 명칭을 홍성 홍주의사총(洪城 洪州義士塚)으로 명칭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의사총(사적 제431호)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9 등

(3) 신청내용

○ 명칭변경

- 현행 : 홍성 의사총(洪城 義士塚)
- 변경 : 홍성 홍주의사총(洪城 洪州義士塚)

○ 명칭변경 요청 검토배경

- 고시에 ‘홍주의사총→홍성 의사총’ 명칭 변경 사유로 원래 명칭 부여,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하여 변경됨을 명시
- 그러나 타 시군 소재 문화재 명칭 변경 사례와 비교할 때 “홍성 의사총”으로의 명칭 변경은 원래명칭(홍주) 부여가 아닌 원래명칭 삭제 후 현재 행정구역 지역명 병기를 적용함
- ‘홍주의병’의 역사적 의미 훼손 우려

○ ‘홍성 홍주의사총’ 명칭이 갖는 의미

-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 기준인 ‘원래명칭 부여’, ‘지역명 병기’에 부합
- 1906년 홍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병오 항일의병의 정신 확인을 통한 ‘홍주의병’의 역사적 의미 확인
- 홍성지역과 인근 지역인 예산·청양 등지에서 의병에 참여한 순국선열들의

## 자긍심 고취 및 명예 회복

### 라. 참고사항

#### (1) 사적 지정명칭 변경 추진경과

- 2009.6.10. : '09년 사적분과 제6차 회의 개최
  - ※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선상패총'의 명칭변경 부의
  - ⇒ 사적 지정 명칭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전반적인 재검토 후 조정
- 2010.3.25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 계획 보고
- 2010.4.14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계획' 사적분과에 보고
- 2010.7.20, 2010.9.8 : 사적분과 소위 검토
- 2010.9.8 : 사적분과 본위 심의(원안접수)
- 2010.10.13 : 사적분과 소위 검토
  - 원칙적으로 문화재명 앞에 지역명 표기
- 2010.11.10 : 사적분과 본위 심의
  - 통합지침 마련 후 시행필요, 지정명칭 개선은 소위 검토 후 본회의 검토
- 2010.12.22 : 사적분과 소위 및 본위
  - 동산, 건축, 사적, 근대문화재분과 등 합동회의를 통해 명칭 조정(안) 의견 조율 필요
- 2011.2.8 : 합동분과(동산, 건축, 사적, 근대분과) 소위
- 2011.2.9 : 사적분과 본위 심의
  - 기존 요지의 명칭에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 서울성곽 → 서울 한양도성, 홍주성 → 홍성 홍주읍성, 쌍산의소 → 화순 쌍산황일의병유적, 등
- 2011.4.1~4.30 : 사적명칭 개선안 지정예고 및 지자체 등 의견수렴
- 2011.5~6 :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심의
- 2011.7.28 : 사적 지정명칭 변경 고시(관보 게재)

#### (2) 지정명칭 변경 건의

##### <홍성군>

- 문화재청 내부지침에 의거 고시 제2011-116호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이 때 우리 군의 경우에도 홍주의사총의 지명이 변경 고시되었음
- '홍주의사총'이 원래 명칭 부여, 한글맞춤법(띄어쓰기) 적용에 따라 '홍성 의사총'으로 변경되었음
- 위와 같은 명칭 변경 중 '홍주의사총'의 '홍성 의사총' 변경은 기준이 되는

원래 명칭 부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주의병’의 무덤이라는 역사성과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지정 명칭 변경을 통한 ‘역사적 성격 회복’이라는 목적에서도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음
- ‘홍주의병’의 명칭은 ‘홍주’가 홍성의 옛 지명일지라도 과거 홍주목 지역이었던 현재의 청양, 예산 등지의 사람도 참여하여 희생되었다는 측면과 당시의 지명 사용을 통해 역사적 성격을 부각한다는 점도 반영된 것임
- 그러다보니 ‘홍주의병’이 이미 역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음
-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면 ‘홍주의사충’을 ‘홍성 의사충’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변경된 ‘홍성 의사충’의 명칭을 지역(행정구역) 명을 병기한 ‘홍성 홍주의사충’으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함

#### <홍주의병유족회장>

- 문화재청에서 ‘홍주의사충’을 ‘홍성 의사충’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홍주의병’ 유족회 회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회 회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음
- ‘홍주의사충’이 홍주의병의 정신과 뜻을 기리는 장소인데 홍주의병에 대한 배려를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임. ‘홍성 의사충’이라할 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이번 명칭 변경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잊게 하고 것임
- 우리 조상이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내려고 한 나라인데, 그들의 정신과 뜻을 후손인 우리가 잘못되게 해야 되겠는지요
- 그리고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이 지금의 지역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홍주의사충’의 명칭은 현재대로 사용하고 그 앞에 홍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봄. 그래서 ‘홍성 홍주의사충’으로 그 명칭이 갖는 의미와 정신을 나타낸다고 하겠음
- 우리 유족회는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은 ‘홍성 홍주의사충’임. 홍주의병 유족회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홍성 홍주의사충’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함. 이런 뜻을 회장인 제가 유족을 대표하여 작성 제출하니,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홍성문화원장>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명칭 변경을 하였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음. 그 중 우리 홍성의 자긍심인 ‘홍주의사충’이 ‘홍성 의사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음

- ‘홍주의사총’은 홍주의병의 정신을 구현하는 곳이며, 우리 고장 홍성이 충과 절의의 공장임을 상징하는 우리의 자부심임
- ‘홍주의사총’이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될 때에는 우리의 얼과 정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컸음
- 그런데 이곳의 명칭이 문화재청에서 현재의 지역 명칭을 부여하여 ‘홍성의사총’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홍성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홍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이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의견서를 내게 되었음
- 우리 홍성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한다면 현재 변경된 ‘홍성 홍주의사총’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명칭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

- 홍성의 역사와 문화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홍주문화향토연구회회장인 본인은 이번 ‘홍주의사총’의 명칭 변경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생각함
- 우리 홍성은 충과 절의의 고장이며, 고려의 최영, 조선의 성삼문, 홍가신, 근대의 김좌진, 한용운 등은 우리 고장이 배출한 인물로 충과 절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임
- 이런 인물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1895년과 1906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홍주의병은 충과 절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행동임. 홍주의병은 현재의 홍성이 아닌 과거 홍주에서 관할하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음. 이런 뜻에서 ‘구백의총’이라 불리던 지명도 ‘홍주의사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홍주의역사와 문화를 보조하고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런데 이번 문화재청의 ‘홍성 의사총’의 명칭 변경은 홍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홍주’가 과거의 지명일 지라도 충남 서해안 지역의 중심이었고, 의병전쟁은 홍주 관할 지역에서 참여하였다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한다면 ‘홍성 의사총’이 아닌 ‘홍성 홍주의사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음
- 이렇게 될 때 홍주의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들의 정신과 뜻도 함께 유지될 수 있다고 봄.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본인은 ‘홍성 의사총’이 아닌 ‘홍성 홍주의사총’으로 명칭 변경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함

## 마. 의결사항

### ○ 보류

- 타 지정문화재의 명칭 사례 · 조사 검토 후 재검토

##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9-064

# 1.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탐방로 개선사업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탐방로(출구쪽 잔디밭 조성)를 정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돕고자 탐방로 개선 공사계획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관람객의 동선 편의를 위해 고분군 잔디밭 끝부분의 진입 동선을 변경·정비하여 관람객이 송산리 고분에서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접근이 편리하도록 문화재 주변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 다. 보고내용

- (1) 보고자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
- (3) 보고내용
  - 사업내용
    - 기존 탐방로 정비(잔디밭 조성 면적 변경747㎡, 진입로 변동구간 39m)

## 라. 향후 조치계획

- 검토의견과 같이 설계 승인하여 사업추진

## 마. 의결사항

- 부결
  - 현행유지

## 2. 덕수궁 내 무선랜 환경(WiFi) 구축 보고

### 가. 보고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무선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무선랜 환경(WiFi) 구축을 하고자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보고사유

- 덕수궁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고품질의 문화유산 안내서비스(무선데이터 품질개선)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랜 환경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보고내용

(1) 보고자 :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 중구 정동 5-1

(3) 사업내용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 설치장소

- AP(AccessPoint), 함체(Rack), AP-Pole 설치

- 지당근처 잔디밭 설치 3방향 서비스 (대한문 정문 입구 앞, 매점, 매표소 주변, 함녕전 주변)

- 덕홍전 앞 잔디밭 설치 및 2방향 서비스 (석화당 주변, 덕홍전 주변)

- 중화전 앞 우측 잔디밭 설치 및 3방향 서비스 (중화전 주변, 구 세종대왕 동상주변, 덕홍전 주변)

- 광접속단자, L2 Switch 설치

- 덕수궁 방재실 내 설치

- 통신배관 설치

- 방재실 윗길, 방재실 담 옆길, 정관현 앞 정원, 정관현 옆길, 지당 옆길, 매점 옆길, 대한문 큰길 옆 정원, 광명문 옆 큰길(콘크리트 절개구간)

- 공사절차

1.통신배관(인력 터파기) → 2.광 Cable 입선 → 3.전원공사 → 4.함체(Rack)



설치 → 5.AP(Patch ANT Pole설치) → 6.L2 , AP 시험 및 개통 → 7.서비스  
최적화

○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35일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3.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1600년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조영동 고분군 일원에서 시행할 예정인 2012년 생생(生生) 문화재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문화재 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에서 200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추진 중인 생생 문화재 사업 “1600년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고 드림.

#### 다. 보고내용

- (1) 보고자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제516호)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조영동 556번지 일원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10.20(토) ~ 10.21(일)
  - 참여대상 : 지역주민 및 방문객 등
  - 주관기관 : 경산시 및 (재)한빛문화재연구원
  - 사업내용 : 사생대회, 사진공모전 및 그림·사진 전시회, 체험교육, 역사체험 연극, 가을음악회 등

#### 라. 참고자료(세부 사업계획서)

####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1 사업개요

### I. 사업배경

- 경산시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국가 압독국의 터전이었던 곳으로 그 역사의 흔적이 사적 제516호로 지정된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으로 남아있음.
- 10여년에 걸친 발굴과정과 현존하는 고분군으로 많은 유물과 유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산시민조차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알지 못하고 고분군 또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주변의 상업적 발전과 무관심에 밀려 그 가치를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압독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흔적으로 남은 고분군에 대한 재조명 필요

### II.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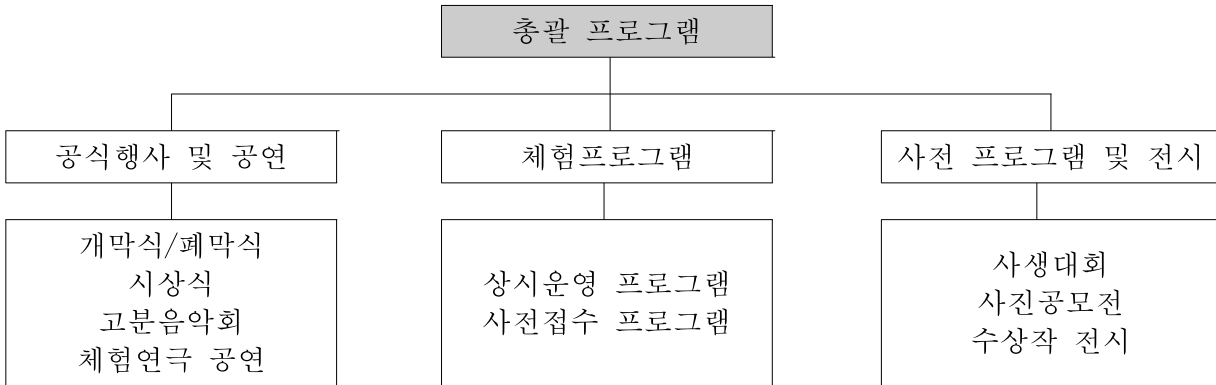
- 압독국과 고분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제고
  - 압독국 고분의 하나인 조영동 고분군을 활용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개최하여 압독국에 대한 존재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내 고장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
- 문화재에 대한 이미지 변화
  - 역사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재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함.

### III. 사업개요

- 사업명 : 1600년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 개최장소 : 경산 조영동고분군(사적 제516호)
- 개최기간 : 2012년 10월 20일 ~ 21일
- 참여대상 : 지역주민 및 방문객 등
- 내용 : 사생대회, 사진공모전 및 그림·사진 전시회, 체험교육, 역사체험 연극, 가을음악회 등

## I. 프로그램 구성계획

## 1. 총괄 프로그램



## 2. 진행일정

| 구분       | 일정           | 세부프로그램 | 비고                                                                                                                                                                       |  |
|----------|--------------|--------|--------------------------------------------------------------------------------------------------------------------------------------------------------------------------|--|
| 진행<br>일정 | 1일차<br>(20일) | 사생대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 집결 및 도화지 배부</li> <li>▪ 10:15 고분군에 대한 설명 및 주제발표<br/>유의사항 전달</li> <li>▪ 10:30 사생대회 시작</li> <li>▪ 12:00 마감 및 작품제출</li> </ul> |  |
|          |              | 부대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00 레크레이션(사생대회 참가자 대상)</li> </ul>                                                                                             |  |
|          |              | 체험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00 발굴 및 복원체험 1차</li> <li>▪ 16:00 발굴 및 복원체험 2차</li> <li>▪ 17:00 고분축조 또는 한옥축조 체험</li> </ul>                                    |  |
|          |              | 개막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00 행사소개</li> <li>▪ 18:05 개회사</li> <li>▪ 18:10 내빈축사</li> <li>▪ 18:20 개회선언</li> </ul>                                          |  |
|          |              | 음악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30 가을저녁 고분음악회</li> </ul>                                                                                                     |  |
|          | 2일차<br>(21일) | 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 유물모형 초콜릿 만들기</li> </ul>                                                                                                   |  |
|          |              | 체험연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0 신라 화랑체험 공연 1차</li> <li>▪ 14:00 신라 화랑체험 공연 2차</li> </ul>                                                                   |  |
|          |              | 시상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30 사생대회 및 사진공모전 시상식</li> </ul>                                                                                               |  |
|          |              | 폐막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 폐회선언</li> </ul>                                                                                                           |  |

| 구분       | 일정          | 세부프로그램                                                                                                                                                    |                                                                                                                                                 | 비고   |
|----------|-------------|-----------------------------------------------------------------------------------------------------------------------------------------------------------|-------------------------------------------------------------------------------------------------------------------------------------------------|------|
| 상시<br>운영 | 체험<br>프로그램  | 자체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독국 왕관 · 허리띠 · 칼 만들기</li> <li>▪ 움집만들기, 와당만들기, 탁본체험 등</li> <li>▪ 압독국 모의유물 만져보기</li> <li>▪ 기타</li> </ul> | 상시운영 |
|          |             | 외주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체험프로그램</li> </ul>                                                                                   |      |
|          | 전시 프로<br>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독국 유물전시</li> <li>▪ 압독국의 역사, 출토유물, 고분군 관련자료 등에 대한 판넬</li> <li>▪ 사진공모전 우수작 전시회</li> <li>▪ 사생대회 우수작 전시회</li> </ul> |                                                                                                                                                 |      |

## II. 부대시설 계획

### 1. 종합안내소

- 장 소 : 조영동고분군 입구 부스 1동
- 진행내용 : 본부석, 행사 및 체험안내, 불편사항 접수, 구급약 제공, 미아보호, 운영인력 식사 및 음료준비 등
- 준비물품 : 행사 홍보물, 구급약품, 식사 및 음료 등
- 배치인원 : 행사안내 3인, 구급약 제공 및 미아보호 1인

### 2. 화장실

- 장 소 : 조영동고분군 외부
- 준비물품 : 이동식 화장실 남, 녀 각 1동

### 3. 체험 부스 및 공연 무대

- 부스 : 몽골천막(5m×5m) 사용, 총 15개
  - 천막 1동에 고정핀 4개사용(고정핀 사이즈는 일반 볼펜사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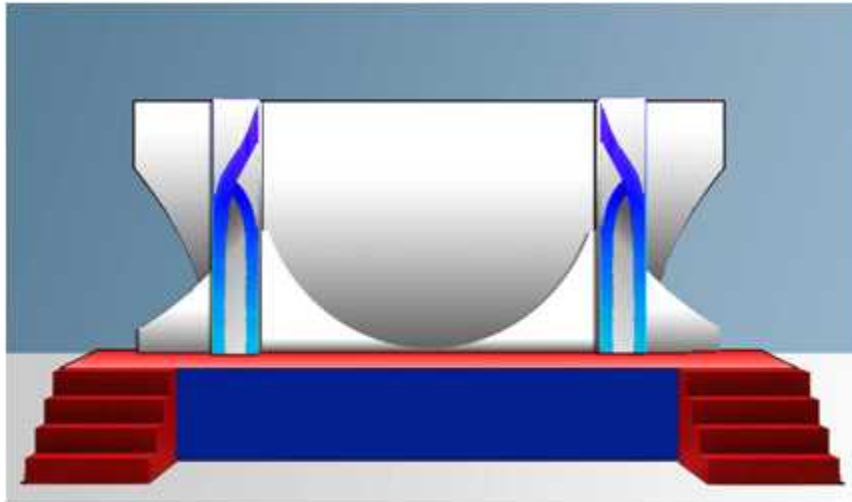


<몽골천막>



<천막고정핀>

○ 무대 : 규격(10m×6m), 철골 및 합판으로 제작



○ 부스 및 무대 배치 계획



■ → 몽골천막    ■ → 무대

### Ⅲ. 인력계획

○ 운영 인원 : 총 11명

| 구 분  | 담당업무              | 인원수 | 비 고        |
|------|-------------------|-----|------------|
| 총괄팀장 | • 프로그램 총괄 기획 및 책임 | 01명 | 상근         |
| 운영지원 | •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개발  | 04명 | 상근         |
| 자원활동 | • 프로그램 운영지원       | 06명 | 비상근        |
| 계    |                   | 11명 | 상근5명/비상근6명 |

### Ⅳ. 안전관리계획

- 프로그램 진행 시 운영인력 외 별도 안전관리 요원 배치(12명)
- 충분한 통솔인력 배치 및 사전 안전교육(소화기사용 등) 시행
- 경사진 부분에 별도의 안전펜스 설치
- 고분군 곳곳에 소화기 배치(10대 이상)
- 관내 소방서와 사전 협조 진행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 경산소방서와 직선거리 350m, 소방차 이동거리 2.11km

## 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가. 보고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주변 한홍사지 발굴지 정비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3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 경기 광주시 | ○○○ | <b>&lt;한홍사지 발굴지 정비&gt;</b><br>○ 위치 : 한홍사지 발굴터<br>○ 내용 : 가설물(가설창고, 울타리, 안내판 등) 설치, 유구정비, 석축정비, 배수로 설치<br>○ 기간 : 허가일~2013.03.31까지<br>○ 허가조건<br>-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되, 별도의 신설 진입로(349m)는 원지형 훼손 및 수목 벌채 등이 수반되므로 개설하지 마실 것. | 조건부 허가 | '12.09.04 |
|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 경기 광주시 | 이○○ | <b>&lt;기상 관측시설 설치&gt;</b><br>○ 위치 : 남한산성 여장 주변(서문, 남문, 동문, 동장대터)<br>○ 수량 : 4대<br>○ 방법 : 각 문 CCTV 폴대에 기상관측시설 설치 및 동장대 터는 사각박스(1m×1m×0.5m) 설치 후 삼각대로 고정<br>○ 기간 : 허가일~2013.12.31까지                                     | 허가     | '12.09.04 |
|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 충남 서산시 | ○○○ | <b>&lt;제11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gt;</b><br>○ 기간 : 2012.10.5-10.7(3일)<br>○ 시설물 : 공연장 300㎡ 등<br>○ 행사 : 고유제, 백일장, 전통공연, 주제체험 등                                                                                                   | 허가     | '12.09.03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 제118호<br>진주성              | 경남<br>진주시 | ○○○ | <p>&lt;비석 보존처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진주성 내</li> <li>○ 대상 : 김시민장군전공비, 축석정충단비, 의암사적비, 쌍충사적비, 김해김씨비각, 박정희대통령 기념비</li> <li>○ 내용 : 몰탈제거, 석재충진, 비각보수, 정밀실측 등</li> <li>○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li> </ul>                                                                                                                                                                                                                                    | 허가        | '12.08.20                |
| 사적 제150호<br>익산<br>미륵사지       | 전북<br>익산시 | 백○○ | <p>&lt;숲가꾸기 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8-2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li> <li>○ 사업내용</li> <li>- 면적 : 0.1ha</li> <li>- 사업내용 : 생육 불량한 리기다소나무 위주의 숲아베기(벌채율 15%)</li> </ul>                                                                                                                                                                                                                                                         | 허가        | '12.08.30                |
| 사적 제153호<br>울주<br>언양읍성       | 울산<br>울주군 | ○○○ | <p>&lt;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언양읍 동부리 171-10번지 일원, 192-7번지 일원, 서부리 158-3번지 일원, 157-32번지 일원, 182-8번지 일원</li> <li>○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li> <li>- 소2-23호 : L=114m, B=8m</li> <li>- 소2-2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공구 : L=115m, B=8m</li> <li>· 2공구 : L=119m, B=8m</li> </ul> </li> <li>- 소2-21호 : L=90m, B=8m</li> <li>- 소2-26호 : L=105m, B=8m</li> <li>○ 허가조건</li> <li>-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할것</li> </ul> | 조건부<br>허가 | '12.09.10                |
| 사적 제155호<br>아산<br>이충무공<br>유허 | 충남<br>아산시 | ○○○ | <p>&lt;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 수목 및 고압선 주변 도괴 위험 수목 등 벌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 덴빈</li> <li>- 벗나무 등 5종 87주</li> <li>○ 태풍 볼라벤</li> <li>- 벗나무 등 5종 107주</li> </ul>                                                                                                                                                                                                                                                                                  | 허가        | '12.08.30.<br>'12.09.04. |
| 사적 제170호<br>안동<br>도산서원       | 경북<br>안동시 | ○○○ | <p>&lt;고사목 제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안동 도산면 토계리 680번지 내 서광명실 앞</li> <li>○ 제거대상 수목</li> <li>- 고사목(회화나무) 1주</li> <li>○ 대상수목 규격</li> <li>- H=7.0, 흉고직경=70cm</li> <li>○ 허가조건</li> <li>- 관람객 및 주변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 강구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함</li> </ul>                                                                                                                                                                                     | 조건부<br>허가 | '12.08.28                |

| 문 화 재                         | 소재지       | 신청인 | 사 업 내 용                                                                                                                                                                                | 처리결과      | 처리일자      |
|-------------------------------|-----------|-----|----------------------------------------------------------------------------------------------------------------------------------------------------------------------------------------|-----------|-----------|
| 사적 제215호<br>금정산성              | 부산<br>금정구 | ○○○ | <보행 데크로드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br>○ 기허가사항<br>- 내용 : 산성로(도로변) 보행 데크설<br>치(L=400m*B=1.8m 내외)<br>- 기간 : 2012.05.22 ~ 2012.09.30<br>○ 변경허가사항<br>- 기간: 허가일 ~ 2012.12.31                            | 허가        | '12.08.31 |
| 사적 제302호<br>순천<br>낙안읍성        | 전남<br>순천시 | ○○○ | <대장간 증축><br>○ 위치 :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28(문<br>화재구역)<br>○ 사업내용<br>- 구조 : 목조, 추가(변동없음)<br>- 면적 : 14.52㎡->15.72㎡(1.2㎡증가)<br>- 높이 : 3.57m(변동없음)                                                   | 허가        | '12.08.20 |
| 사적 제320호<br>울산<br>경상좌도병<br>영성 | 울산<br>중구  | ○○○ | <보호구역 정비><br>○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15-14외 3<br>필지<br>○ 사업내용<br>- 사업면적 1,989㎡<br>- 사업내용 : 경작물 및 가건물 등 철<br>거, 관목류 및 잔디식재<br>○ 허가조건<br>- 제출된 계획대로 사업시행 하되, 정<br>비구역에 식재하는 관목류는 전통수<br>종으로 할 것 | 조건부<br>허가 | '12.08.27 |
| 사적 제320호<br>울산<br>경상좌도병<br>영성 | 울산<br>중구  | ○○○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허가사항 변경<br>허가)><br>○ 기허가사항<br>- 내용 : 산성로(도로변) 보행 데크설<br>치(L=400m*B=1.8m 내외)<br>- 기간 : 2011.07.27 ~ 2012.03.31<br>○ 변경허가사항<br>- 기간: 허가일 ~ 2013.12.31                        | 허가        | '12.08.31 |
| 사적 제425호<br>부여<br>화지산<br>유적   | 충남<br>부여군 | ○○○ | <부여 화지산 유적 내 조망정자 신축<br>(1동)><br>○ 지붕폭 : 6.68m<br>○ 높이 : 7.73m                                                                                                                         | 허가        | '12.09.03 |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